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6

2011.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1. 6. 10.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1. 6. 30.
4.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7. 5.)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7. 6.)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재무국장 : 서강석)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⑴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총 22조 5,154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인 20조 9,256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7%인 19조 9,782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9,474억원임

○ 이 중 다음회계연도 이월사업비 8,833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원임

⑵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조 9,024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0%인 14조 6,344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7%인 14조 5,892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452억원임

○ 이 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3,493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9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4조 6,344억원으로 예산현액 15조 9,024억원의 8.0%인 1조 2,680억원이 덜 징수되었음

○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면,

- 시세가 10조 9,53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1조 5,957억원의 5.5%인 6,424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등록세 징수 감소, 경제위기에 따른 전년도 법인수익 및 개인사업자 소득 감소 등에 의한 것임
- 세외수입에서는 1조 5,86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7,382억원의 8.7%인 1,514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재산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방교부세는 1,41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374억원의 3.2%인 4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4,22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4,511억원의 2.0%인 286억원이 적게 보조되었으며, 이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등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임

○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조 9,024억원의 91.7%인 14조 5,892억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3,49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9,639억원임

○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하면

- 일반공공행정비는 3조 8,488억원의 92.5%인 3조 5,599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369억원의 89.3%인 1,222억원
- 교육비는 2조 5,115억원의 96.0%인 2조 4,120억원
- 문화 및 관광비는 5,791억원의 80.9%인 4,686억원
- 환경보호비는 6,837억원의 80.7%인 5,515억원

- 사회복지비는 3조 4,641억원의 96.3%인 3조 3,342억원
- 보건비는 3,224억원의 91.2%인 2,940억원
- 농림해양수산비는 178억원의 84.3%인 150억원
- 산업·중소기업비는 2,307억원의 83.0%인 1,914억원
- 수송 및 교통비는 1조 6,580억원의 90.4%인 1조 4,990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조 4,911억원의 81.7%인 1조 2,180억원
- 예비비 등 기타는 9,583억원의 96.4%인 9,234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3,493억원으로,
- 이 중 명시이월액은 40억원이고,
- 사고이월액은 3,453억원임

○ 명시이월사업은
- 장애인전용수련원건립 35억원
-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5억원임

○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 447억원
- 서울시 신청사 건립 259억원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191억원 등이며,

○ 사고이월액 3,453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공사추진중 장애요인 발생이 32.4% 1,118억원
- 사전절차지연이 31.4%인 1,083억원
- 사업계획 변경이 20.9%인 722억원 등임

○ 집행잔액 9,639억원의 주요 발생 사업은
-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3,249억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1,471억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751억원
- 장충·예장·회현지구 정비 158억원 등이며,

○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8.8%인 5,673억원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3.2%인 2,235억원
- 예산절감이 14.5%인 1,394억원 등임

⑶ 특별회계

○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총12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조 6,130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1%인 6조 2,912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인 5조 3,890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9,022억원임

○ 차인잔액 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5,34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2억원임

○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6조 2,912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6,130억원의 4.9%인 3,218억원이 덜 징수되었음

○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 2,138억원이며, 그 내역은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083억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1억원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원임

○ 예산현액 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 5,356억원이며, 그 내역은
- 교통사업 특별회계 630억원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2억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416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2,389억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84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156억원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829억원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억원
- 수도사업 특별회계 319억원임

○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조 6,130억원의 81.5%인 총 5조 3,890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5,34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6,900억원임

○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359억원의 83.2%인 6,123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487억원의 76.0%인 8,733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81억원의 81.2%인 2,585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7,785억원의 75.0%인 5,842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777억원 77.7%인 8,376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436억원의 86.2%인 4,687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395억원의 91.0%인 2,180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85억원의 99.9%인 6,079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1억원의 90.1%인 109억원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501억원의 60.3%인 1,509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2억원의 95.5%인 21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8,981억원의 85.1%인 7,646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545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510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265억원 등이며,

○ 사고이월액 5,340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사전절차지연이 37.5%인 2,001억원
- 보상협의 지연이 23.6%인 1,258억원
- 사업계획 변경이 14.0%인 746억원 등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비사업관련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620억원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594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578억원

등이며

○ 집행잔액 6,900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6.0%인 3,170억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2.7%인 2,949억원
- 예산절감이 5.8%인 397억원 등임

⑷ 예비비 관련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77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129억원임

이 중 지출액은 92.9%인 1,049억원이고,

집행잔액은 7.1%인 80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 지역상생 발전기금출연 340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5억원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97억원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532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53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11억원, 사고이월액은 37억원, 집행잔액은 5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인건비 2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사업비 12억원 등 임

⑸ 기금 관련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결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900억원이며

○ 2010년도 중에 3조 6,072억원이 수입되고,
3조 6,299억원이 지출되어,

○ 2010년도말 현재액은 5,673억원으로 전년대비 3.8%인 227억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390억원, 재난관리기금 495억원, 기후변화기금 138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 중소기업육성기금 7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271억원, 감채기금 137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⑹ 채권 관련

○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7,250억원으로서,
○ 2010년도 중에 1조 2,560억원이 발생하고,
1조 4,385억원이 소멸하여,
○ 2010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1,843억원, 10개 특별회계 3,927억원, 6개 기금 2조 9,655억원 등 총 3조 5,42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1,825억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891억원, 식품진흥기금 23억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7억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 재정투융자기금 1,49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9억원, 사회복지기금 47억원 등이 증가하였음

⑺ 채무 관련

○ 2010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조 8,177억원임

○ 이는 2009년말 3조 2,454억원 대비 17.6%인 5,72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택사업 586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 101억원,
배급수관 정비등 상수도 사업 27억,
수해복구 및 삼풍사고 재해보상 사업 25억은 감소하였으나,

○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1,400억원,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4,717억원,
채무부담행위 345억이 증가하였음

⑻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련

○ 2010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4%인 1조 4,925억원이 감소한 103조 8,571억원으로 행정재산 89조 7,424억원, 일반재산 14조 1,147억원임

○ 2010년도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2009년 대비 4조 6,498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6조 1,423억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서초 염곡동 공영차고지 매입으로 361억원, 양천메디컬센터 신축으로 20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뚝섬4구역부지 매각으로 1,539억원, 은평뉴타운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으로 143억원 등은 감소하였음

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관련

○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47억원으로 전년대비 31.4%인 433억원이 감소하였음

○ 2010년도 중 물품구매·관리전환 등으로 548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처분·정수품목 변경 등으로 981억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컴퓨터 서버 등 물품구매 190억원, 냉난방기 및 CCTV 등 7종이 정수품목에 추가되어 123억원 증가하였고,고가 장비인 소방차 및 구급차가 정수품목에서 제외되어 682억원이 감소하였음

⑽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관련

○ 2010년도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19조 3,526억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9,794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4조 3,732억원임

○ 2010년도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총수익은 17조 8,224억원이고, 총비용은 16조 9,442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82억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1. 2010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10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1조 2,573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3,286억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21조 5,859억원 으로서

전년대비 10.6%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5조 4,220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1,921억 1,8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5조 6,141억 1,8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2개로서

당초예산액	5조 8,353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1,364억 8,2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5조 9,717억 8,200만원 임

〈표 3-1〉 2010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14차)	추경예산	최종예산액
합 계	21,257,300	328,600	-	21,585,900
일 반 회 계	**15,422,000**	**192,118**		**15,614,118**
일반공공행정	3,796,877	7,037		3,803,914
공공질서및안전	127,877	310		128,187
교육	2,505,294	-		2,505,294
문화및관광	525,247	13,574		538,821
환경보호	587,065	9,138		596,203
사회복지	3,291,685	115,610		3,407,295
보건	294,059	7,404		301,463
농림해양수산	14,802	2,984		17,785
산업、중소기업	219,841	7,666		227,508
수송및교통	1,608,418	7,550		1,615,968
국토및지역개발	1,415,152	20,494		1,435,645
예비비	137,743	-		137,743
기타	897,939	353		898,292
특 별 회 계	**5,835,300**	**136,482**		**5,971,782**
공기업특별회계	803,200	-		803,2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200	-		2,2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1,000	-		801,000
기타특별회계	5,032,100	136,482		5,168,58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5,400	16,330		611,730
교통사업특별회계	1,036,300	10,629		1,046,92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5,900	75		285,975
주택사업특별회계	653,700	109,006		762,706
도시개발특별회계	880,600	-		880,6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2,300	160		472,46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39,500	-		239,5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8,500	-		608,5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	122		12,122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47,900	160		248,060

2. 2010 회계연도 결산 개관

⑴ 결산총괄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21조 5,859억원 이며
전년도이월액 9,294억 9,100만원 을 합한
예산현액은 22조 5,153억 9,1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0조 9,256억 3,7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2.9%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19조 9,782억 3,3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88.7%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9,474억 400만원 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4.2%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8,792억 2,0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 명시이월액은 40억 1,700만원 으로
신규발생하였으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98억 4,900만원 으로
전년대비 73.1% 감소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월액중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
543억 1,8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0.3%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음.

〈표 3-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010	총 계	22,515,391 (2010최종) 21,585,900 (2009이월) 929,491	20,925,637 (92.9%)	19,978,233 (88.7%)	947,404 (4.2%)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4,017 879,220 9,849 54,318
	일반회계	15,902,401 (2010최종) 15,614,118 (2009이월) 288,283	14,634,416 (92.0)	14,589,232 (92.0%)	45,184 (0.3%)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4,017 345,252 8,825 △312,911
	특별회계	6,612,990 (2010최종) 5,971,782 (2009이월) 641,208	6,291,221 (95.1%)	5,389,001 (81.5%)	902,220 (13.6%)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533,967 1,024 367,229
2009	총 계	25,338,774 (2009최종) 24,153,807 (2008이월) 1,184,967	23,683,001 (93.5%)	22,767,443 (89.9%)	915,558 (3.6)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20,000 - 929,491 - 36,670 -70,603
	일반회계	17,465,623 (2009최종) 17,045,196 (2008이월) 420,427	16,359,345 (93.7%)	16,260,091 (93.1%)	99,254 (0.6%)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 - 288,283 - 25,448 -214,477
	특별회계	7,873,151 (2009최종) 7,108,611 (2008이월) 764,540	7,323,656 (93.0%)	6,507,352 (82.7%)	816,304 (10.4%)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20,000 - 641,208 - 11,222 143,874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⑵ 세입결산

① 총 괄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22조 5,153억 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조 9,256억 3,700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2.9%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0.3%)대비 7.4%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3.5%) 대비 0.6%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3%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3.9%)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5.2%) 대비 0.9% 감소하였음.

〈표 3-3〉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22,515,391	22,192,709	20,925,637	268,728	998,343	92.9	94.3
일반회계	15,902,401	15,779,012	14,634,416	266,502	878,093	92.0	92.7
특별회계	6,612,990	6,413,697	6,291,221	2,226	120,250	95.1	98.1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조 9,024억 100만원에 대하여 15조 7,790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2.0%인 14조 6,344억 1,600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10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1.7%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1.2% 감소한 92.7%임

〈표 3-4〉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15,902,401	15,779,012	14,634,416	1,144,596	266,503	878,093	92.0	92.7
지 방 세	11,595,724	11,988,317	10,953,331	1,034,986	265,426	769,560	94.5	91.4
세 외 수 입	1,738,243	1,696,399	1,586,789	109,610	1,077	108,533	91.3	93.5
지방교부세	137,344	141,782	141,782	-	-	-	103.2	100.0
보 조 금	1,451,090	1,422,514	1,422,514	-	-	-	98.0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980,000	530,000	530,000	-	-	-	54.1	100.0

〈표 3-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예 산 액	15,614,118	17,045,196	14,489,715	12,879,836	10,668,181	14,139,409
예산현액	15,902,401	17,465,623	14,815,040	13,145,358	10,946,562	14,454,997
징수결정액	15,779,012	17,428,072	15,946,545	14,905,392	13,556,936	15,523,191
수 납 액	14,634,416	16,359,345	14,792,751	13,798,309	12,108,033	14,338,571
결 손 액	266,503	252,985	299,756	334,370	279,249	286,573
수납액/예산현액	92.0	93.7	99.8	105.0	110.6	100.2
수납액/징수결정액	92.7	93.9	92.8	92.6	89.3	92.3

〈표 3-6〉 2010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 액(C) (B-A)	비율(%) (C/A)
합 계	11,595,724	10,953,331	-642,393	-5.5
보통세	9,338,876	8,644,749	-694,127	-7.4
취 득 세	1,577,945	1,347,609	-230,336	-14.6
등 록 세	1,852,589	1,608,565	-244,024	-13.2
주 민 세	40,998	42,220	1,222	3.0
자동차세	581,349	586,199	4,850	0.8
농업소득세	-	-	-	-
도 축 세	1,963	5,024	3,061	155.9
레 저 세	120,269	129,429	9,160	7.6
담배소비세	567,735	565,227	-2,508	-0.4
주 행 세	443,381	345,884	-97,497	-22.0
지방소비세	389,350	427,677	38,327	9.8
지방소득세	2,984,372	2,773,008	-211,364	-7.1
특별시분재산세	778,925	813,907	34,982	4.5
목 적 세	2,100,364	2,148,355	47,991	2.3
도시계획세	843,012	897,676	54,664	6.5
공동시설세	141,455	152,883	11,428	8.1
지역개발세	428	385	-43	-10.0
지방교육세	1,115,469	1,097,411	-18,058	-1.6
과년도시세	156,484	160,227	3,743	2.4

〈표 3-7〉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0예산현액 (A)	2010결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1,738,243	1,586,789	-151,454	-8.7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723,459	433,665	-289,794	-40.1
	재산임대수입	65,922	74,616	8,694	13.2
	사용료수입	118,952	107,761	-11,191	-9.4
	수수료수입	3,547	3,499	-48	-1.4
	사업 수입	469,170	211,338	-257,832	-55.0
	징수교부금	19,856	20,827	971	4.9
	이자 수입	46,012	15,624	-30,388	-66.0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1,014,784	1,153,124	138,340	13.6
	재산매각수입	172,457	244,434	71,977	41.7
	순세계잉여금	0	-214,476	-214,476	-
	이 월 금	318,283	313,730	-4,553	-1.4
	전 입 금	0	0	0	-
	융자금수입	4,517	7,138	2,621	58.0
	예탁금및예수금	0	0	0	-
	부 담 금	16,842	60,112	43,270	256.9
	잡 수 입	461,063	722,327	261,264	56.7
	과년도수입	41,622	19,859	-21,763	-52.3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6조 6,129억 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6조 2,912억 2,1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1%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0.5%)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3.0%)대비 2.1%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1%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7%)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8.4%)대비 0.3% 감소하였음.

〈표 3-8〉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6,612,990	6,413,697	6,291,221	122,476	2,226	120,250	95.1	98.1
기타특별회계	5,712,707	5,521,826	5,422,907	98,920	1,690	97,230	94.9	98.2
도시철도건설사업	735,883	944,225	944,225	0	0	0	128.3	100.0
교 통 사 업	1,148,697	1,144,859	1,085,723	59,136	1,400	57,736	94.5	94.8
주 택 사 업	778,531	755,556	736,878	18,678	0	18,678	94.6	97.5
도시개발사업	1,077,749	840,102	838,800	1,303	0	1,303	77.8	99.8
하수도사업	543,552	491,255	485,197	6,059	290	5,769	89.3	98.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39,500	223,963	223,903	60	0	60	93.5	100.0
의료급여기금	608,500	613,630	613,630	0	0	0	100.8	100.0
한강수질개선사업	12,122	12,502	12,502	0	0	0	103.1	100.0
광역교통시설사업	318,147	328,593	314,908	13,684	0	13,684	99.0	95.8
재정비촉진	250,026	167,141	167,141	0	0	0	66.8	100.0
공기업특별회계	900,283	891,871	868,314	23,556	536	23,020	96.4	97.4
지역개발기금	2,200	2,142	2,142	0	0	0	97.4	100.0
수 도 사 업	898,083	889,729	866,172	23,556	536	23,020	96.4	97.4

(3) 세출결산

① 총 괄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조 5,153억 9,100만원에

지출액이 19조 9,782억 3,300만원(예산현액대비 88.7%)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832억 3,700만원(예산현액대비 3.9%)

집행잔액은 1조 6,539억 2,100만원(예산현액대비 7.3%)임.

〈표 3-9〉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21,585,900	929,491	22,515,391	20,811,142	19,978,233	883,237	1,653,921	7.35
일반회계	15,614,118	288,283	15,902,401	14,909,812	14,589,232	349,269	963,899	6.06
특별회계	5,971,782	641,208	6,612,990	5,901,329	5,389,001	533,967	690,022	10.43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5조 9,024억 100만원에

지출액은 14조 5,892억 3,200만원(예산현액대비 91.7%)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92억 6,900만원(예산현액대비 2.2%)

집행잔액은 9,638억 9,900만원(예산현액대비 6.06%)임.

〈표 3-10〉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5,614,118	288,282	15,902,401	14,909,812	14,589,232	349,269	963,899	6.06
일반공공행정	3,803,914	44,890	3,848,804	3,596,850	3,559,917	36,935	251,952	6.55
공공질서및안전	128,187	8,709	136,895	128,016	122,213	5,803	8,879	6.49
교 육	2,505,294	6,206	2,511,500	2,413,366	2,411,948	1,418	98,134	3.91
문화및관광	538,821	40,315	579,136	534,144	468,631	65,609	44,895	7.75
환 경 보 호	596,203	87,492	683,695	615,769	551,551	69,094	63,050	9.22
사 회 복 지	3,407,295	56,784	3,464,079	3,343,418	3,334,249	13,064	116,766	3.37
보 건	301,463	20,934	322,397	308,106	294,053	14,061	14,283	4.43
농림해양수산	17,785	0	17,785	14,963	14,963	0	2,822	15.87
산업·중소기업	227,508	3,175	230,683	193,474	191,376	17,298	22,008	9.54
수송및교통	1,615,968	41,974	1,657,942	1,526,387	1,498,958	29,491	129,494	7.81
국토및지역개발	1,435,645	55,461	1,491,106	1,311,944	1,217,999	96,495	176,612	11.84
예 비 비	137,743	△112,877	24,866	0	0	0	24,866	100
기 타	898,292	35,219	933,511	923,372	923,372	0	10,138	1.09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조 6,129억 9천만원에

지출액은 5조 3,890억 1백만원(예산현액대비 81.5%)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339억 6천 8백만원(예산현액대비 8.1%)

집행잔액은 6,900억 2천 1백만원(예산현액대비 10.4%)임.

〈표 3-11〉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특별회계	5,971,782	641,208	6,612,990	5,901,329	5,389,001	533,967	690,022	10.43%
기타특별회계	5,168,582	544,125	5,712,707	5,088,071	4,622,292	475,888	614,526	10.7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611,730	124,153	735,883	663,173	612,278	51,005	72,600	13.15%
교통사업	1,046,929	101,768	1,148,697	983,435	873,324	116,850	158,523	13.80%
광역교통시설	285,975	32,172	318,147	306,242	258,518	48,357	11,272	3.54%
주택사업	762,706	15,825	778,531	646,833	584,235	62,598	131,698	16.92%
도시개발	880,600	197,149	1,077,749	1,019,243	837,571	183,735	56,443	5.24%
하수도사업	472,460	71,092	543,552	479,224	468,697	10,705	64,149	11.80%
집단에너지공급	239,500		239,500	217,984	217,984		21,516	8.98%
의료급여기금	608,500		608,500	607,928	607,928		572	0.09%
한강수질개선	12,122		12,122	11,161	10,880	281	961	7.93%
재정비촉진	248,060	1,966	250,026	152,848	150,877	2,357	96,792	38.71%
공기업특별회계	803,200	97,083	900,283	813,258	766,709	58,079	75,495	8.39%
지역개발기금	2,200		2,200	2,102	2,102		98	4.45%
상수도사업	801,000	97,083	898,083	811,156	764,607	58,079	75,397	8.40%

(4) 불용액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조 6,539억 2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3%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5.9%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6.5%)대비 0.8% 증가하였음.

〈표 3-12〉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653,921	862,206	179,055	540,549	9,841	62,270
일 반 회 계	963,900	567,330	139,377	223,510	8,817	24,866
특 별 회 계	690,021	294,876	39678	317039	1024	37404
기타특별회계	614,526	290,125	13,234	278,102	1,024	32,04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2,600	63,613	0	8,394	380	213
교통사업	158,523	56,276	3,759	89,554	0	8,934
광역교통시설	11,272	10,007	0	652	198	415
주택사업	131,698	11,072	32	107,538	0	13,056
도시개발	56,443	20,519	4,131	27,626	0	4,167
하수도사업	64,149	18,774	5,301	39,914	160	0
집단에너지공급	21,516	16,887	8	2,143	0	2,478
의료급여기금	572	0	0	286	286	0
한강수질개선	961	3	1	725	0	232
재정비촉진	96,792	92,974	2	1,270	0	2,546
공기업특별회계	75,495	4,751	26,444	38,937	0	5,363
지역개발기금	98	0	0	98	0	0
수 도 사 업	75,397	4,751	26,444	38,839	0	5,363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9,639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6.1%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4.4%에 비해 1.7% 증가하였으며,
전년도(5.3%)대비 0.8%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6,900억 2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0.4%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9.0%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9.2%)대비 1.2% 증가하였음.

⑸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18건에 791억 4,1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경비를 이용을 한 것임.

〈표 3-13〉 예산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118	79,141	△79,141	
일반회계	117	42,513	△42,513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36,628	△36,628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족분 충당

○ 예산의 전용은 총 283건에 653억 9,2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8건, 32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14〉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2010	2009	2008	2007	2006
합 계 (건수)	65,392 (283)	97,640 (291)	61,724 (412)	52,704 (298)	64,140 (275)
일반회계 (건수)	62,197 (250)	78,484 (239)	43,379 (344)	41,469 (241)	24,645 (215)
특별회계 (건수)	3,195 (33)	19,156 (52)	18,345 (68)	11,235 (57)	39,495 (60)

(6) 예비비

① 총 괄

○ 예비비 예산 1,909억 2천 9백만원 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281억 5천만원 중

지출액은 1,160억 3천 6백만원 이고

이월액은 36억 5천 8백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84억 5천 6백만원 임

〈표 3-15〉 201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90,929	128,150	119,674	116,036	3,658	8,456
일반회계	137,743	112,878	104,936	104,936	0	7,942
특별회계	53,186	15,272	14,738	11,100	3,658	514

② 일반회계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377억 4천 3백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1,128억 7천 8백만원 중

지출액은 1,049억 3천 6백만원 이고

이월액은 0원 이며

집행잔액은 79억 4천 2백만원 임

〈표 3-16〉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37,743**	**112,878**	**104,936**	**104,936**	**0**	**7,942**
일반공공행정		45,636	45,251	45,251	0	385
공공질서및안전		242	237	237	0	5
문화및관광		10,366	10,321	10,321	0	45
환경보호		915	876	876	0	39
사회복지		39,081	33,706	33,706	0	5,375
보건		286	12	12	0	274
산업、중소기업		3,046	1,433	1,433	0	1,613
수송및교통		8,310	8,304	8,304	0	0
국토및지역개발		3,770	3,570	3,570	0	200
기 타		1,226	1,226	1,226	0	0

③ 특별회계

○ 특별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531억 8천 6백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152억 7천 2백만원 중
지출액은 111억원 이고
이월액은 36억 5천 8백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5억 1천 4백만원 임

〈표 3-17〉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53,186	15,272	14,738	11,100	3,658	514
기타특별회계	42,836	10,285	9,826	6,188	3,658	439
도시철도건설사업	1,680	1,467	1,462	1,462	0	5
교 통 사 업	10,198	1,264	1,220	1,220	0	44
주 택 사 업	13,056	0	0	0	0	0
도시개발사업	10,593	6,426	6,016	2,378	3,658	390
하수도사업	1,638	1,128	1,128	1,128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477	0	0	0	0	0
한강수질개선사업	233	0	0	0	0	0
광역교통시설사업	415	0	0	0	0	0
재 정 비 촉 진	2,546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	10,350	4,987	4,912	4,912	0	75
지역개발기금	2,145	2,145	2,100	2,100	0	45
수 도 사 업	8,205	2,842	2,812	2,812	0	30

⑺ 이월비

○ 2010회계연도 이월비 중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40억 1천 7백만원 임.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452억 5천 2백만원 으로

원인행위분이 3,147억 4천만원 이고

원인행위미필분이 305억 1천 2백만원 이며

○ 특별회계에서 5,339억 6천 8백만원 으로

원인행위분이 5,095억 2천 7백만원 이고

원인행위미필분이 244억 4천 1백만원 임

〈표 3-18〉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22,515,391	4,017	879,220	0	3.9
일반회계	15,902,401	4,017	345,252	0	2.2
특별회계	6,612,990	0	533,968	0	8.1
기타특별회계	5,712,707	0	475,889	0	8.3
도시철도건설사업	735,883	0	51,005	0	6.9
교통사업	1,148,697	0	116,850	0	10.2
광역교통시설사업	318,147	0	48,357	0	15.2
주택사업	778,531	0	62,598	0	8.0
도시개발사업	1,077,749	0	183,735	0	17.0
하수도사업	543,552	0	10,706	0	2.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39,500	0	0	0	0.0
의료급여기금	608,500	0	0	0	0.0
한강수질개선사업	12,122	0	281	0	2.3
재정비촉진	250,026	0	2,357	0	0.9
공기업특별회계	900,283	0	58,079	0	6.5
지역개발기금	2,200	0	0	0	0.0
수도사업	898,083	0	58,079	0	6.5

〈표 3-19〉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637**	**883,237**	**730**	**929,491**	**987**	**1,184,968**	**779**	**866,774**	**594**	**565,445**
사고이월	632	879,220	730	929,491	987	1,184,968	779	866,774	594	565,445
명시이월	5	4,017	0	0	0	0	0	0	0	0
계속비이월	0	0	0	0	0	0	0	0	0	0

〈표 3-20〉 최근 5년간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금액비율
2010	22,515,391	19,978,233	1,653,921	879,220	632	3.9
2009	25,338,774	22,767,443	1,641,840	929,491	730	3.7
2008	21,841,177	19,432,291	1,223,918	1,184,968	987	5.4
2007	19,635,502	17,859,275	909,454	866,773	641	4.4
2006	16,547,493	15,189,012	793,037	565,444	594	3.4

⑻ 잉여금

① 잉여금 총괄

○ 2010회계연도 잉여금은 9,474억 4백만원 으로

명시이월 40억 1천 7백만원 ,

사고이월 8,792억 2천만원 ,

국비잔액 98억 4천 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43억 1천 8백만원 임

② 일반회계 잉여금

○ 일반회계중 잉여금은 451억 8천 4백만원 으로

명시이월 40억 1천 7백만원 ,

사고이월 3,452억 5천 2백만원 ,

국비잔액 88억 2천 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129억 1천 1백만원 임

③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중 잉여금은 9,022억 2천만원 으로

사고이월 5,339억 6천 7백만원 ,

국비잔액 10억 2천 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672억 2천 9백만원 임

〈표 3-21〉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여금 (A=B+C)	현년도 채무상환 (B)	잉여금내역(C)					2009년도 잉여금	잉여금 증감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7,404**	**0**	**4,017**	**879,219**	**0**	**9,849**	**54,318**	**915,558**	3.5
일반회계	45,184	0	4,017	345,252	0	8,825	-312,911	99,254	-54.5
특별회계	902,220	0	0	533,967	0	1,024	367,229	816,304	10.5

(9) 기 금

○ 15개 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5,672억 7,400만원으로 2009년도말의 6,273억 8,700만원에 비해 60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22〉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합 계	627,387	3,607,206	3,629,921	△22,715	567,274
재정투융자기금	170,538	1,811,803	1,772,786	39,017	209,555
중소기업육성기금	166,956	671,292	750,840	△79,548	87,408
식품진흥기금	3,903	24,374	20,363	4,012	7,914
기후변화기금	22,321	22,605	8,831	13,774	36,096
도로굴착복구기금	19,455	23,204	27,003	△3,799	15,656
여성발전기금	1,137	884	1,027	△142	995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주민기금	4,360	19,779	17,373	2,406	6,767
사회복지기금	16,125	17,789	22,168	△4,379	11,745
체육진흥기금	-	2,051	2,047	4	4
감 채 기 금	38,711	732,868	746,553	△13,686	25,026
재난관리기금	113,458	276,163	226,685	49,478	162,936
남북교류협력기금	435	1,965	243	1,723	2,158
대외협력기금	5,030	2,428	6,443	△4,016	1,014
신청사건립기금	43,505	-	27,095	△27,095	0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21,453	-	465	△465	0

※ 신청사건립기금과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은 '10. 1. 1자로 폐지되어 '10회계연도 증감액이 없어야 하나,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여 이를 당해연도 증감액에 반영한 것임

- 신청사건립기금 '09년 현재액 43,505백만원 중 27,095백만원 '10년도 사고이월, 16,410백만원 일반회계 귀속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09년 현재액 21,453백만원 중 465백만원 '10년도 사고이월, 20,988백만원 일반회계 귀속

⑽ 채권

○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5,424억 9,3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184억 7,500만원 ,
- 융자금채권 3조 4,297억 8,700만원 ,
- 미수금채권 940억 4,300만원 ,
- 기타 채권 1억 8,800만원 임

※ 2009년도말에 비해 1,825억 6,400만원이 감소

〈표 3-23〉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725,056	△182,563	1,255,954	1,438,517	3,542,493
일반회계	152,379	31,860	157,367	125,507	184,239
특별회계	369,919	22,805	124,077	101,272	392,723
기 금	3,202,758	△237,228	974,510	1,211,738	2,965,530

〈표 3-24〉 종류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기업	기 타	
합 계	3,542,493	184,239	392,724	144,312	248,412	2,965,530
보증금채권	18,475	12,357	3,980	-	3,980	2,138
융자금채권	3,429,787	153,344	313,051	144,200	168,851	2,963,392
미수금채권	94,043	18,426	75,617	105	75,512	0
기타채권	188	112	76	7	69	0

⑾ 부채

○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조 9,794억 5,900만원으로 2009년도말에 비해 2,943억 1,7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25〉 부채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4,685,142**	**20,587,724**	**20,293,407**	**0**	**294,317**	**4,979,459**
지방채	**3,245,354**	**1,141,733**	**603,941**	**0**	**537,792**	**3,783,146**
일반회계	1,076,800	530,000	392,450		137,550	1,214,350
기타특별회계	1,851,761	611,733	208,791		402,942	2,254,703
도시철도건설사업	1,036,054	611,733	140,055		471,678	1,507,732
주 택 사 업	736,593	0	58,613		-58,613	677,980
하수도사업	79,114		10,123		-10,123	68,991
공기업특별회계	316,793	0	2,700		-2,700	314,093
지역개발기금	299,093				0	299,093
수 도 사 업	17,700		2,700		-2,700	15,000
세입세출외현금	**87,770**	**378,755**	**374,029**		**4,726**	**92,496**
일반회계	80,061	346,718	342,793		3,925	83,986
공기업특별회계	7,709	32,037	31,236		801	8,510
기타채무[1)]	**1,352,018**	**19,067,236**	**19,315,437**		**-248,201**	**1,103,817**
일반회계	110,293	14,320,517	14,388,481		-67,964	42,329
기타 특별회계	1,217,229	4,623,823	4,896,109		-272,286	944,943
공기업특별회계	24,496	122,896	30,847		92,049	116,545

1) 금전 지급목적 부채로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⑿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10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7,799개, 현재액 946억 7,300만원으로 2009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2,235개 증가하고, 금액은 △433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수량 4,414개, 금액 547억 9, 3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수량 2,179개, 금액 981억 1,500만원임.

〈표 3-26〉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정수	2009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9,229	수량	5,564	881	3,533	4,414	312	1,867	2,179	7,799
		금액	137,995	19,082	35,711	54,793	7,868	90,247	98,115	94,673

② 공유재산

○ 2010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7,234천㎡ 70조 9,262억 6,400만원 ,
- 건물 6,705천㎡ 3조 2,684억 8,400만원 ,
- 기타 14,068천건 29조 6,623억 1,100만원 임

○ 공유재산은 총 103조 8,570억 5,9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2009년도말에 비해 1조 4925억 2,500만원 감소하였음.

○ 주요 감소사유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6조(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적용)가 2010. 8.5 시행됨에 따라 건물 등 재산가격에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 금액(2조 8,869억원) 소급 반영에 의한 것

〈표 3-27〉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5,349,584	4,649,785	6,142,309	103,857,059
행정재산	계	91,304,596	2,336,130	3,898,315	89,742,410
	공공용재산	76,311,016	1,709,564	2,659,035	75,361,545
	공용재산	6,405,816	531,896	628,937	6,308,774
	기업용재산	7,112,205	78,265	594,552	6,595,917
보존재산		1,475,560	16,405	15,791	1,476,174
잡종재산		14,044,988	2,313,655	2,243,994	14,114,649

⑬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0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8,01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8,980억 8,337만원임.

수익적 수입 : 6,069억 4,854만원

자본적 수입 : 2,911억 3,483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8,897억 2,899만원
- 징 수 액 8,661억 7,248만원
- 미수납액 235억 5,651만원임.

〈표 3-28〉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801,000	898,083	889,729	866,172	23,557	96.4	97.3
수익적수입	606,949	606,949	648,189	624,698	23,491	102.9	96.4
자본적수입	194,051	291,134	241,540	241,474	66	82.9	99.9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8,111억 5,626만원
- 지 출 액 7,646억 0,699만원
- 이 월 액 580억 7,871만원
- 불 용 액 753억 9,765만원

〈표 3-2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801,000**	**898,083**	**811,157**	**764,607**	**58,078**	**75,398**	**85.1**	**6.5**	**8.4**
수익적지출	421,570	422,962	386,997	383,504	3,740	35,718	90.7	0.9	8.4
자본적지출	379,430	475,121	424,160	381,103	54,338	39,680	80.2	11.4	8.3

❑ 수도사업 지방채 현황

〈표 3-30〉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엔)

구 분	서 울 시 투융자기금	환 경 부 재특자금
차 입 원 금	301,200	27,000
미상환잔액	233,260	15,000
상 환 기 간	2001.3.15 ~ 2020.12.15	2001.3.15 ~ 2016.12.20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0년도말 자산은 5조 1,254억 3,666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902억 6,781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도말 부채 총액은 3,490억 8,032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658억 0,534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도말 자본은 4조 7,763억 5,634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44억 6,247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441억 9,015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3억 1,058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31〉 연도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4,689,231	4,736,662	4,848,693	4,935,169	5,125,436	3.8
	유 동 자 산	271,464	288,840	344,235	160,080	151,718	-5.2
	비유동 자 산	4,417,767	4,447,822	4,504,458	4,775,089	4,973,718	4.1
부채	계	216,955	167,603	176,515	183,275	349,080	90.4
	유 동 부 채	67,392	55,132	52,698	40,978	126,302	208.2
	비유동 부 채	149,563	112,471	123,817	142,297	222,778	56.5
자본	계	4,472,276	4,569,059	4,672,178	4,751,894	4,776,356	0.5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258,098	258,098	0.0
	자본잉여금	3,381,092	3,416,678	3,462,655	3,494,870	3,537,493	1.2
	이익잉여금	833,086	894,283	951,425	998,926	980,765	-1.8
손익	당기순이익	86,118	61,229	57,143	47,501	44,190	-6.9
	수 익	655,060	644,005	639,986	637,056	629,592	-1.1
	비 용	568,942	582,776	582,843	589,555	585,402	-0.7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0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22억원이고,
예산현액은 22억원임.

- 수익적 수입 : 4억 5,000만원
- 자본적 수입 : 17억 5,000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21억 4,171만원
  - 징 수 액 21억 4,171만원
  - 미수납액 없음

〈표 3-3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2,200	2,200	2,142	2,142	0	97.4	100
수익적수입	450	450	389	389	0	86.4	100
자본적수입	1,750	1,750	1,753	1,753	0	100.2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21억 216만원
- 지 출 액 21억 216만원
- 이 월 액 없음
- 불 용 액 9,784만원

〈표 3-33〉 지역개발기금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2,200	2,200	2,102	2,102	0	98	95.5	0	4.5
수익적지출	450	450	402	402	0	48	89.3	0	10.7
자본적지출	1,750	1,750	1,700	1,700	0	50	97.1	0	2.9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표 3-3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299,138	45	299,093	2013. 8. 1~ 2020.12.31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0년도말 자산은 3,272억 4,568만원이고
○ 2010년도말 부채 총액은 3,237억 1,854만원이며
○ 2010년도말 자본은 35억 2,714만원으로
○ 2010년도말 당기순이익은 4억 7,922만원임.

〈표 3-35〉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155,799	310,838	318,871	327,246	2.6
	유동자산	5,799	11,638	14,571	20,846	43.1
	고정자산	150,000	299,200	304,300	306,400	0.7
부채	계	153,450	308,159	315,823	323,719	2.5
	유동부채	0	0	0	0	0
	고정부채	153,450	308,159	315,823	323,719	2.5
자본	계	2,349	2,679	3,047	3,527	15.7
	자본금	181	181	181	181	0
	자본잉여금	0	0	0	0	0
	이익잉여금	2,168	2,498	2,866	3,346	16.7
손익	당기순이익	2,013	329	369	479	29.8
	수익	5,761	4,980	8,074	8,377	3.7
	비용	3,748	4,651	7,705	7,898	2.5

⑭ 재무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

○ 2010년말 총자산은 119조 3,526억 633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161억 1,66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부채는 4조 9,794억 5,987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943억 1,773만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14조 3,731억 4,646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217억 9,887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101조 6,648억원, 85.2%)이 대부분이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14조 3,651억원, 12.1%)과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3조 1,552억원, 2.6%) 등임.

○ 부채는 임대주택사업(6,779억원)과 도시철도사업(1조 5,077억원) 및 지역개발사업(2,991억원) 등 장기차입부채가 대부분임.

〈표 3-36〉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말 현재	구성비율	2009년말 현재	구성비율
자산 총계	119,352,606	100.00	118,736,490	100.00
유동자산	3,155,202	2.64	2,525,139	2.13
투자자산	14,365,137	12.04	14,594,895	12.29
일반유형자산	7,268,475	6.09	6,998,715	5.89
주민편의시설	22,688,335	19.01	22,944,272	19.32
사회기반시설	71,708,086	60.08	71,523,322	60.24
기타비유동자산	167,371	0.14	150,147	0.1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9,352,606		118,736,490	
부채 총계	4,979,460	100.00	4,685,142	100.00
유동부채	1,585,057	31.83	1,746,454	37.27
장기차입부채	3,221,961	64.71	2,781,430	59.37
기타비유동부채	172,442	3.46	157,259	3.36
순자산 총계	114,373,146	100.00	114,051,348	100.00
일반순자산	13,044,366	11.41	13,935,201	12.22
특정순자산	3,092,798	2.70	2,977,697	2.61
고정순자산	98,235,982	85.89	97,138,449	85.17

② 재정운영보고서

○ 2010회계연도 총수익은 17조 8,224억 4,758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9,630억 2,938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비용은 16조 9,441억 9,808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740억 8,331만원이 감소하였음

○ 운영차액은 8,782억 4,949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4,371억 1,267만원이 증가하였음

○ 수익은 지방세수익(11조 2,882억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자체조달수익 비중 82%→87%로 증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2조 2,942억원, 13%) 등임

○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시비조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7조 3,430억원, 43.3%), 운영비(위탁대행사업비 등 4조 4,543억원, 26.3%), 기타이전비용(민간보조금 등 1조 5,921억원, 9.4%) 등임

〈표 3-37〉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1.1~12.31	구성비율	2009.1.1~12.31	구성비율
수익총계	17,822,447	100.00	16,859,418	100.00
자체조달수익	15,504,760	87.00	13,752,731	81.57
정부간이전수익	2,294,216	12.87	2,950,448	17.50
기타수익	23,471	0.13	156,239	0.93
비용총계	16,944,198	100.00	17,418,281	100.00
인건비	1,049,554	6.19	1,011,259	5.81
운영비	4,454,385	26.29	5,044,211	28.97
정부간이전비용	7,343,014	43.34	8,191,933	47.03
기타이전비용	1,592,123	9.40	2,450,711	14.06
기타비용	2,505,122	14.78	720,167	4.13
운영차액	878,249		(558,863)	

〈표 3-38〉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일반회계		87,622,251	1,340,665	86,281,586	14,468,729	14,544,422	△75,693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763,231	1,715,088	2,048,143	71,298	96,957	△25,659
	교통사업	5,834,266	433,944	5,400,322	894,886	1,549,072	△654,186
	주택사업	7,727,721	1,554,777	6,172,944	1,329,372	155,920	1,173,452
	도시개발	4,514,579	108	4,514,471	709,546	118,625	590,921
	하수도사업	1,561,573	70,090	1,491,483	398,229	435,767	△37,53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17,734	4,374	113,360	210,555	228,447	△17,892
	의료급여기금	5,945	-	5,945	609,718	607,931	1,787
	한강수질개선	1,912	-	1,912	11,714	10,203	1,511
	광역교통시설	467,745	883	466,862	289,261	121,685	167,575
	재정비촉진	401,250	-	401,250	36,136	124,607	△88,471
	소계	24,395,956	3,779,264	20,616,692	4,560,715	3,449,214	1,111,500
기금	재정투융자	4,333,314	3,201,348	1,131,966	152,806	116,410	36,396
	중소기업육성	1,535,000	1,112,860	422,140	72,094	81,232	△9,138
	식품진흥	73,854	-	73,854	9,309	15,890	△6,581
	기후변화	92,401	-	92,401	15,458	1,694	13,764
	도로굴착복구	16,278	-	16,278	23,207	26,736	△3,529
	여성발전	24,333	-	24,333	882	1,027	△145
	자원회수시설	14,643	-	14,643	19,782	15,373	4,409
	사회복지	89,872	-	89,872	16,381	17,759	△1,378
	체육진흥	57,022	-	57,022	2,050	-	2,050
	감채	1,507,422	841,407	666,015	293,071	474,183	△181,112
	재난관리	545,513	76,032	469,481	114,742	167,881	△53,139
	남북교류협력	17,548	-	17,548	620	243	377
	대외협력	18,829	-	18,829	737	4,943	△4,206
	소계	8,326,029	5,231,647	3,094,382	721,139	923,371	△202,23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5,125,437	349,080	4,776,357	629,592	585,402	44,190
	지역개발기금	327,246	323,719	3,527	8,377	7,898	479
	소계	5,452,683	672,799	4,779,884	637,969	593,300	44,669
내부거래		△6,444,313	△6,044,915	△399,398	△2,566,108	△2,566,108	-
합계		119,352,606	4,979,460	114,373,146	17,822,446	16,944,198	878,249

3. 검토요지

1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1조 5,858억 9,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6%, 2조 5,679억 7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21조 5,858억 9,900만원)은 당초예산 21조 2,573억원과 간주처리분 3,285억 9,900만원[1]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9,294억 9,100만원을 더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1% (2조 8,233억 8,300만원) 감소한 22조 5,153억 9,000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1.6% (2조 7,573억 6,300만원) 감소한 20조 9,256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조 6,344억 1,500만원과 특별회계 6조 2,912억 2,1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12.3%, 2조 7,892억 900만원 감소한 19조 9,78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조 5,892억 3,200만원과 특별회계 5조 3,890억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3.5% (318억 4,600만원) 증가한 9,474억 400만원임

1) '10회계연도 간주처리내역 : 총 14차 3,285억9,900만원
1차(2010.2.8. 14,464백만원)~14차(2010.12.29.117,164백만원)

〈표 3-39〉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010	총 계	22,515,391 (2010최종) 21,585,900 (2009이월) 929,491	20,925,637 (92.9%)	19,978,233 (88.7%)	947,404 (4.2%)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4,017 879,220 9,849 54,318
	일반회계	15,902,401 (2010최종) 15,614,118 (2009이월) 288,283	14,634,416 (92.0)	14,589,232 (92.0%)	45,184 (0.3%)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4,017 345,252 8,825 △312,911
	특별회계	6,612,990 (2010최종) 5,971,782 (2009이월) 641,208	6,291,221 (95.1%)	5,389,001 (81.5%)	902,220 (13.6%)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	 533,967 1,024 367,229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2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 공채 등에 의한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며 서울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14조 6,344억 1,600만원)와 12개 특별회계(6조 2,912억 2,100만원)를 합한 20조 9,256억 3,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1.6%, 2조 7,573억 6,3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당초 징수결정액(22조 1,927억 900만원)보다 1조 2,670억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지난 2009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805억 9,700만원 증가한 것임

○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져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하나 미수납액 발생규모는 여전히 1조원 이상 발생되고 있고, 2010회계연도에도 지난 2009회계연도와 비슷한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표 3-40〉 최근 5년간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2010	22,192,709	20,925,637	1,267,072	94.3
2009	24,869,476	23,683,001	1,186,475	95.2
2008	23,147,148	21,790,936	1,356,211	94.1
2007	21,997,566	20,694,677	1,302,889	94.1
2006	19,786,445	18,194,659	1,591,786	92.0

⑵ 일반회계 세입결산

① 시세 세입관련

○ 2010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은 10조 9,533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1조 9,883억 1,700만원) 대비 91.4%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91.3%)을 나타내는 바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3-41〉 최근 5년간 시세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예산현액	11,595,724	11,216,511	10,797,539	8,944,322	8,766,303
징수결정액 (A)	11,988,317	11,775,671	12,363,636	11,340,130	10,987,207
실수납액 (B)	10,953,331	10,826,303	11,295,077	10,310,205	10,005,543
징수율 (B/A, %)	91.4	91.9	91.4	90.9	91.1

○ 다만,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인 예산현액과 지방세 수납액을 비교할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11조 5,957억 2,400만원)보다 5.5%, 6,423억 9,300만원(취득세 2,303억원, 등록세 2,440억원 등) 적게 징수된 바 향후 기획조정실과 재무국간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경기 침체로 세입이 감소될 경우 감추경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조정 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2009년 일반회계 세입에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0.4% 이상 더 국세가 징수되어 세입추계를 소극적 또는 방어적으로 편성 하였다고 판단되나, 서울시는 오히려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당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직의 확대와 전문성 제고,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②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010회계연도의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검토하면, 시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1.4%, 10조 9,533억 3,1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3-42〉 최근 5년간 시세 세입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10	11,988,317	10,953,331	1,034,986	265,426	769,560	91.4	8.6
2009	11,775,671	10,826,303	949,368	249,270	700,098	91.9	8.1
2008	12,363,636	11,295,077	1,068,559	295,637	772,922	91.4	8.6
2007	11,340,130	10,310,205	1,029,925	327,628	702,297	90.9	9.1
2006	10,987,207	10,005,543	981,664	271,209	710,455	91.1	8.9

○ 2010회계연도의 경우, 미수납액 규모는 1조 34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856억 1,800만원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도 161억 5,600만원 증가한 2,654억 2,6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수 차례 지적한 것과 같이 시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 발생규모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매 회계연도 시세수입 현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입원은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세입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비율을 산정하여 경제성장과 밀접한 세목인 바 서울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의 산정비율 등이 상향·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임.

○ 2010회계연도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됨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2009회계연도보다 161억 5,600만원 증가하였고, 차년도 이월 규모도 694억 2,600만원 증가하였음

○ 특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여전히 감소되지 않고 있는바 과오납반환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당초 징수결정된 시세 세입예산이 적기에 징수되어 미수납 발생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시세체납 사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표 3-43〉 최근 5년간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2010	769,560 (100.0)	5,059 (0.7)	42,367 (5.5)	156,166 (20.3)	206,433 (26.8)	317,585 (41.3)	41,950 (5.4)
2009	700,098 (100.0)	5,002 (0.7)	42,009 (6.0)	163,403 (23.3)	185,530 (26.5)	272,809 (39.0)	31,345 (4.5)
2008	772,922 (100.0)	8,816 (1.1)	26,879 (3.5)	125,100 (16.2)	188,686 (24.4)	391,502 (50.7)	31,939 (4.1)
2007	702,297 (100.0)	145 (0.0)	33,197 (4.7)	103,250 (14.7)	185,510 (26.4)	366,350 (52.2)	13,845 (2.0)
2006	710,455 (100.0)	1,446 (0.2)	26,170 (3.7)	59,157 (8.3)	241,261 (34.0)	360,445 (50.7)	21,976 (3.1)

③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으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나[2] 매각 및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2012년까지 감소 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에 연동될 수밖에 없음

2) 2009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수입 64.2%, 세외수입 14.5%, 지방교부세 6.1%, 국고보조금 9.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로 구성되었으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수입 72.9%, 세외수입 10.9%, 지방교부세 0.8%, 국고보조금 9.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현액 기준)

○ 2010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1조 5,867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조 6,963억 9,900만원)보다 1,096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표 3-44〉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09	2008	2007	2006
예산액	1,449,961	2,119,347	1,881,548	2,680,948	1,161,437
예산현액	1,738,243	2,539,774	2,206,873	2,946,470	1,439,818
징수결정액 (A)	1,696,399	2,284,260	2,199,889	2,431,671	1,700,312
실수납액 (B)	1,586,789	2,164,900	2,114,655	2,354,514	1,233,073
미수납액	109,610	119,360	85,234	77,157	467,239
징수율 (B/A, %)	93.5	94.8	96.1	96.8	72.5

○ 2010회계연도의 경우, 경기불황을 고려하여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직전 회계연도보다 세외수입을 감액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을 5,878억 6,100만원 적게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납액은 직전회계 보다 5,781억 1,100만원 감소된 1조 5,867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97억 5,000만원 감소한 바 경기변화에 따라 세외수입 규모가 연동된다 하여도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모든 실·국은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이거나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입총괄부서 등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앤디워홀 특별전」은 입장료수입[3] 배분비율을 3.596%로 약정하였으나 「로뎅 특별전」은 1.413%로 약정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 직전보다 7,300만원 감소된 바 향후에는 「앤디워홀 특별전」의 선례를 고려하여 입장료수입 배분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입장료 수입에는 아트상품 판매 수입이 포함됨

〈표 3-45〉 시립미술관 특별전별 사용료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전시명	기간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비고
		계	입장료수입	대관료수입	(입장료수입배분비율)
로뎅 (A)	'10. 4.30 ~'10. 8.22	289,945	34,425	255,520	(1.413%)
앤디워홀 (B)	'09.12.12 ~'10. 4. 4	338,893	107,893	231,000	(3.596%)
A-B		△48,948	△73,468	24,520	(△2.183%)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3개 임대시설에서 임대수입이 발생되어 임대수입 전액을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함에도 일부수입을 "공유재산임대료"로 수납하지 않고, 대관료에 해당하는 "기타사용료"로 부과하여 세입 조치한 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중 "세입결산목별조서"상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재된 수납총액(4,484만원)보다 6,672만원이 증액된 1억 1,157만원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기타사용료"는 기재된 수납총액(9,268만원)보다 6,672만원이 감액된 2,595만원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바

- 세외수입의 총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하여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과 수납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입결산 목별조서를 정정하여 제출했어야 함에도 이를 적기에 바로잡지 못한 채 세입·세출 결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해당 사업소에 대해서 주의 조치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기관은 세외수입의 발굴 및 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질적인 체납 등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다 유형별로 검토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④ 지방교부세 관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1,373억 4,400만원)보다 44억 3,800만원 초과한 1,417억 8,200만원이 교부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10.1.1.폐지)와 분권교부세('14년까지만 교부 예정)가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었음

○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체단체에 대한 지원이 폐지되고, 대체재원으로 지방소비세[4]가 신설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2,000억원 이상의 세입감소[5]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세입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4)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
5) 2010년 지방소비세 징수액 4,277억원

〈표 3-46〉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과목명	예산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2010	계	137,344	141,782	△4,438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2,000	△2,000
	특별교부세	17,344	19,782	△2,438
2009	계	1,073,745	785,695	288,050
	부동산교부세	940,998	661,611	279,387
	분권교부세	120,029	111,366	8,663
	특별교부세	12,718	12,718	0
2008	계	779,877	385,166	394,711
	부동산교부세	655,358	243,967	411,391
	분권교부세	117,369	117,369	0
	특별교부세	7,150	23,830	△16,680
2007	계	468,362	379,741	88,621
	부동산교부세	363,700	261,411	102,289
	분권교부세	104,662	115,326	△10,664
	특별교부세	-	3,004	△3,004
2006	계	99,076	255,663	△156,587
	부동산교부세		155,789	△155,789
	분권교부세	98,395	98,395	0
	특별교부세	681	1,479	△798

⑤ 국고보조금 관련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1조 4,510억 8,900만원)보다 285억 7,500만원 적은 1조 4,225억 1,400만원이 교부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국고 보조금액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히, 국비 매칭사업에 발생되는 불용, 사고이월 등의 사례는 중앙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된 국비부담분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빈번히 발생되고, 복지부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거나 사업량을 축소하는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대응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바

○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초내시된 국비가 부족수령 되지 않도록 행정적, 정치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임

⑶ 특별회계 세입결산[6)]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조 6,129억 9,000만원에 대하여 6조 2,912억 2,1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5.1%로 나타나고 있음

○ 〈표 3-47〉과 같이 '06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까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됨

6) 10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표 3-47〉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10	6,413,697	6,291,221	122,476	2,226	120,250	95.1	98.1
2009	7,441,404	7,323,656	117,748	4,960	112,788	93.0	98.4
2008	7,200,603	6,998,186	202,417	2,067	200,351	99.6	97.2
2007	7,092,175	6,896,368	195,807	5,817	189,989	106.3	97.2
2006	6,229,509	6,086,626	142,883	2,744	140,139	108.7	97.7

○ 그러나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된 총미수납액 1,224억 7,600만원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체 미수납액의 80.8%(989억 1,900만원)가 미수납된 것인바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구조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표 3-48〉와 같이 미수납액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이미 일반회계 시세 수입부문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해야 할 것임

〈표 3-48〉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97,229	341	1,569	839	24,724	10,584	59,172
도시철도건설사업	-	-	-	-	-	-	-
교통사업	57,735	281	186	771	22,471	9,914	24,112
주택사업	18,678	-	-	-	3	-	18,675
도시개발사업	1,303	-	1,303	-	-	-	-
하수도사업	5,769	-	80	68	2,250	670	2,70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60	60	-	-	-	-	-
의료급여기금	-	-	-	-	-	-	-
한강수질개선사업	-	-	-	-	-	-	-
광역교통시설사업	13,684	-	-	-	-	-	13,684
재정비촉진	-	-	-	-	-	-	-

3 세출결산 관련

(1) 불용액 관련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1조 6,539억 2,1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5.8%)과 비교 하여도 1.5% 가량 높은 수준임.

○ 2010회계연도의 경우, 불용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20억 8,100만원 증가된 1조 6,539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 라고 볼 수 있으나 2010회계연도는 지난 2009회계연도보다 예산 현액이 2조 8,233억 8,400만원이나 적다는 점에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발생 비율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됨

〈표 3-49〉 최근 5년간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예산현액	22,515,391	25,338,774	21,841,177	19,635,502	16,547,493
불 용 액 (불용률)	1,653,921 (7.3)	1,641,840 (6.5)	1,223,918 (5.6)	909,454 (4.6)	793,036 (4.8)
일반회계 (불용률)	963,900 (6.1)	917,249 (5.3)	507,020 (3.4)	517,344 (3.9)	293,094 (2.7)
특별회계 (불용률)	690,021 (10.4)	724,591 (9.2)	716,898 (10.2)	392,110 (6.0)	499,942 (8.9)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특별회계(10개) 포함.

○ 다만,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3-49〉과 같이 예산현액대비 7.3%인 1조 6,539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시되는 결과이며 각종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재정정책의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기 편성된 예산중 1조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정책을 등한시한 채 한정된 시정에 전념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예산총괄부서는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실·국, 사업소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장역점 사업, 부서장의 의욕 등을 앞세워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필요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50〉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0	1,653,921 (100.0)	862,206 (52.1)	179,055 (10.8)	540,549 (32.7)	9,841 (0.6)	62,270 (3.8)
2009	1,641,840 (100.0)	479,540 (29.2)	31,483 (1.9)	952,704 (58.0)	35,080 (2.1)	143,033 (8.7)
2008	1,223,918 (100.0)	218,218 (17.8)	104,341 (8.5)	761,350 (62.2)	48,240 (3.9)	91,769 (7.5)

※ 공기업특별회계포함

○ 과거 불용액 발생사유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나 〈표 3-50〉와 같이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전체 불용액 발생사유중 52.1%인 8,622억 6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 바

-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준비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편성된 예산도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실제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택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본부 등을 포함한 실·국은 반드시 개별사례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매뉴얼화 시켜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사유중 32.7%인 5,405억 4,9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잔액” 성격의 불용액은 그 발생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당시 실제집행가능한 예산을 정밀산출하는 기술을 높이는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1〉 실·국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불용액계 (전체 대비)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578,426 (100.0)	857,455 (54.3)	152,610 (9.7)	501,613 (31.8)	9,841 (0.6)	56,907 (3.6)
주택본부	277,941 (17.6%)	172,776	104	89,459		15,602
도시교통본부	240,877 (15.3%)	138,574	3,759	89,195		9,349
도시안전본부	168,466 (10.7%)	81,418	16,847	69,611	358	233
행정국	136,884 (8.7%)	127,277	165	9,442		
도시계획국	98,706 (6.3%)	63,814	290	30,340	96	4,166
재무국	97,429 (6.2%)		75,247	22,182		
교육협력국	96,859 (6.1%)	94,235	152	2,472		
도시기반시설본부	86,130 (5.5%)	75,538	1,048	8,951	380	213
푸른도시국	66,591 (4.2%)	30,068	11,585	24,778	160	
맑은환경본부	57,733 (3.7%)	31,083	5,912	18,107	154	2,478
복지건강본부	53,500 (3.4%)	10,962	2,517	35,711	4,3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6,417 (2.9%)	9,002	15,497	21,233	686	
경제진흥본부	42,880 (2.7%)	10,632	6,925	23,848	1,474	
기획조정실	28,728 (1.8%)	611	1,238	2,012		24,866
여성가족정책관	25,748 (1.6%)	2,296	1,803	19,503	2,145	
한강사업본부	19,584 (1.2%)	7,316	15	12,254		
소방재난본부	11,971 (0.76%)		2,669	9,250	52	
정보화기획단	7,142 (0.45%)	959	2,042	4,135	6	
시민소통기획관	4,362 (0.28%)	231	1,920	2,190	20	
서울특별시의회	3,402 (0.22%)	187	529	2,687		
서울역사박물관	2,187 (0.14%)		795	1,391		
서울시립대학교	1,620 (0.10%)	383	250	987		
인재개발원	1,449 (0.09%)		681	768		
시립미술관	1,127 (0.07%)		496	632		
기술심사담당관	237 (0.02%)	24	35	179		
감사관	235 (0.01%)		33	202		
비상기획관	183 (0.01%)	70	57	56		
대변인	38 (0.00%)			38		

주1) 괄호( )는 각 실·국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비율임.

2)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액 제외

3)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현액(8,980억 8,300만원)의 8.4%인 753억 9,800만원이 불용됨

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조정교부금(행정국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대비(1조 7,220억 7,200만원) 6.8%인 1,178억 2,100만원이 불용된 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징수됨으로써 당초 편성된 예산중 1,178억 2,100만원을 자치구에 미교부한 것이라 하나

- 예산편성당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세입예측을 세입총괄부서가 낙관하여 소요예산을 이전 회계연도보다 확대편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더욱이 2010년도 예산심사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취득세를 전년 대비 3.9% 감액편성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나 취득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에 기초한 등록세를 20.1% 증액편성한 것은 세입추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소 과다하게 추계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어, 동 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기초한 세출예산편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의 성격이 자치구의 비대칭적 세입여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적게 교부될 경우, 서울시의 내시액에 기초하여 재정운용을 계획하는 자치구의 세입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향후 내시액과 교부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에 기초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 소관)은 2012년까지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도심남북 녹지축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자 보상비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운3구역사업의 시행보류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1,494억 9,900만원)의 39.7%인 593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도 예산심사당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지연으로 2010년 6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소요예산 전액을 일시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 불용액 발생이 이미 예견된 사업이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 차례 추진한 사례가 있어 불용액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했을 것임에도 기편성된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593억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시킨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서울시의 한정된 세입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 할 것임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은 정거장 규모조정 등 재설계로 인한 공정변경으로 시설비 예산현액(1,279억 3,800만원)의 43.5%인 557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2009회계연도에서도 사업지연으로 예산현액(1,447억 4,800만원)의 57.4%인 831억 3,7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확보 당시의 적극성 만큼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 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과 용인경전철의 정책적 실패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소요예산을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전원에 대한 심각한 주의가 필요함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소관)은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이미 2009회계연도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예산현액(5,025억 5,300만원)의 24.3%인 1,221억 3,700만원이 불용되어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2010 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2,405억 5,300만원)의 8.1%인 194억 2,100만원이 또다시 불용된 것임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국비의 연말교부로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세입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불용액 발생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관)중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현액대비(1,810억원) 20.5%인 370억 2,800만원이 불용된 바
- 경유 등의 가격 상승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도 상승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급단가에 변동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나

- 유가변동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제유가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 과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제유가 추세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운수업계(버스)유가보조금(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 소관)중 운수업계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대비(251억 8,000만원) 35.5%인 89억 3,200만원이 불용된 바 대기질 향상을 위해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임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소관)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라 세입예산이 삭감되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시설비 예산현액(517억 3,500만원)의 22.3%인 115억 3,4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그 외에도 U-한강 구축 (한강사업본부 소관)은 한강공원 12개소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나 실시설계용역 지연 및 조달청과의 계약조건 협의 이견('10.12. 7)으로 기편성된 예산현액(40억 4,000만원)의 75.0% 30억 2,900만원이 불용된 바

- 이미 지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동 사업이 투자심사('09.10.30)를 조건부[7]로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앞서 선결해야할 조건이 있어 소요예산의 일부만 편성하는 등 연차별 투자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한 바 있음에도

- 사업주관부서가 선결요건 등은 소홀히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과욕으로 소요예산만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산현액의 75.0%가 불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검토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예산현액중 20.0%인, 8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됨으로써 2010회계연도에 실제 집행된 예산은 예산현액의 4.9%인 1억 9,7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가 동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시되는 바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 불용액 발생원인의 대다수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기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 하거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의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미리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이상 공기가 연장되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 편성된 소요예산을 반드시 감추경하여 서울시의 연간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7)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 : ① 기존 한강공원 GIS 시스템, 한강르네상스 웹홍보관 등과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② 한강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홍수시 관리방안과 이용객 파손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이며, ③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감안해야 하고, ④ 한강공원에 설치되는 만큼 u-안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표 3-52〉 불용액 발생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현황(전체)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행정국 행정과	조정교부금	1,722,072	117,821	6.8
주택본부 재정비1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법정전출	83,699	83,699	100.0
재무국 공유재산과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00,000	75,023	75.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지방세지원	856,629	68,203	8.0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63,372	61,986	97.8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149,499	59,381	39.7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31,967	57,769	43.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90,280	56,000	19.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444,400	45,000	10.1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주택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4,001	42,001	50.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181,000	37,028	20.5
주택본부 재정비1과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5,000	32,277	92.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24,866	24,866	1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지방교육세전출	1,125,052	23,076	2.1
재무국 세무과	시세 징수교부금	249,026	20,805	8.4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70,000	20,000	28.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심순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20,322	19,509	96.0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40,453	19,421	8.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15,756	15,450	98.1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예비비	12,292	12,292	100.0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53,350	11,822	22.2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시설부	한강예술섬조성공사 시행	20,592	11,531	56.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928	11,050	61.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Green Parking 사업	25,580	10,519	41.1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66,458	10,011	15.1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은평새길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0,000	10,000	100.0

주1)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 제외

2)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사업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영등포정수장재건설(1,2공장) 및 고도정수처리공사로 예산현액(452억6,300만원)의 8.5%인 38억 6,100만 원이 예산절감을 사유로 불용됨

②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0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2,583개 사업(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 제외)중 160개 사업이 기편성된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임.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법정전출(주택본부 재정비1과 소관)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나 서울시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긴축운영함에 따라 예산배정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기편성된 예산현액 836억 9,9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은평새길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은 협상지연으로 보상절차가 미이행 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10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소관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집단에너지 특별회계)은 택지개발 규모 축소로 사업성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 85억 4,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평창터널 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지연에 따른 보상절차가 미이행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69억 2,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소관)은 악취공법선정 등 설계지연으로 전체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48억 1,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지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과 소관)은 소송진행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3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대로변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소관)는 한전과 사업비 분담 협상이 결렬되어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28억원 전액 불용되었고, 갈현근린공원(은평) 조성(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은 사업구간내 이미 도로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중단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예산현액 15억원 전액 불용되었음.

〈표 3-5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주택본부 재정비1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법정전출	83,699	83,699	100.0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은평새길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0,000	10,000	〃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8,546	8,546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평창터널 건설	6,926	6,926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5,000	5,000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노량진역앞 교통광장 조성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500	4,5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강남대로(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3,442	3,442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	3,000	3,0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과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3,000	3,000	〃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대로변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2,800	2,800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삼성동 159-1호 주변 하수암거 이설공사	2,500	2,500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2,000	2,000	〃
맑은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00	1,600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갈현근린공원(은평) 조성	1,500	1,500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133	1,133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천호~하정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1,113	1,113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백운동천 하천정비	1,100	1,100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마들길단절구간 연결	1,000	1,000	〃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설치	1,000	1,000	〃

※ 예산현액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함

○ 그 외에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과 소관 서울비전 영상관 설치운영(예산현액 9억원),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안양천 산책로 관리초소 설치(예산현액 9억원),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예산현액 8억 9,100만원[8]),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소관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포장 기능유지차량 도입(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현액 8억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G20 정상회의 기념 세계 여성지도자 포럼(민간위탁금 예산현액 5억 5,000만원),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소관 DMC 단지 활성화(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억 5,000만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소관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류스타 활용 서울국제가요제 개최(민간위탁금 예산현액 5억원),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청계천 하류(좌안) 보안등 설치(시설비 예산현액 5억원) 등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바

- 편성예산의 규모를 떠나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소관부서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주장하여 예산을 확보한 결과 계획변경,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임

- 향후 집행불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전액 불용시키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과정을 강제하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발생한 실·국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여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소관 사업중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9](예산현액 94억 7,900만원), 노을카페 설치(예산 현액 19억 2,800만원), 월드컵공원 해치미로 설치(예산현액 8억원), 노을공원 소리 테마파크(예산현액 3억원) 등의 사업은 “(가칭)그린 랜드 관광벨트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기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것인 바

- 소관 실국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의 선행 절차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결과적으로 기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사례로 검토됨

- 동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09년도 9·10월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되어 편성 요청된 각 사업별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예산총괄부서는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과정을 보다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

8) 국내여비 2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884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
9)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예산현액 94억 7,900만원)는 설계용역비중 기집행된 2억 2,1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의 97.5%인 92억 4,500만원이 불용됨.

- 특히,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시, 예결특위본심사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것에 대하여는 적절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임

〈표 3-54〉 노을공원 이용편의시설 개선 관련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9,479	9,245	97.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노을카페 설치	1,928	1,927	99.9	〃
월드컵공원 해치미로 설치	800	800	100.0	〃
노을공원 소리 테마파크	300	300	100.0	〃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중 영등포정수장재건설(1,2공장) 및 고도 정수처리공사는 예산현액(452억 6,300만원)대비 8.5%인 38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고,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건설공사는 예산현액(242억 6,900만원)대비 10.6%, 25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동 사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출절약 등을 통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과거에도 예산절감을 사유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불용시킨 사례가 있어[10] 예산편성후 예산절감 부분을 모색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시 예산절감요인을 미리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여건변화나 법령변경, 예산절감 등으로 기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으나

-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히 편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이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후 예산편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10)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06회계연도에는 252억 3,700만원, '07회계연도 510억 2,600만원, '08회계연도 693억 7,900만원, '09회계연도 204억 8,800만원을 예산절감을 사유로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제출함

○ 그동안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때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불용액(1조 6,539억 2,100만원) 발생규모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120억 8,100만원 증가하여 불용액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22조 5,153억 9,100만원)과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25조 3,387억 7,400만원)을 비교할 경우, 불용률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매년 1조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체계에 대하여 전면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처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⑵ 예산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②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으로

○ 2010회계연도에는 민선5기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10. 9.27)으로 기존 1실 5본부 8국 체제가 1실 8본부 5국 체제로 변경되어 510건, 9,800억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표 3-55〉 최근 5년간 이체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2010	합 계	510	980,024	980,024
	• 일반회계	426	612,363	612,363
	• 특별회계	84	367,661	367,661
2009	합 계	153	92,172	92,172
	• 일반회계	148	72,063	72,063
	• 특별회계	5	20,109	20,109
2008	합 계	96	44,480	44,480
	• 일반회계	64	16,001	16,001
	• 특별회계	32	28,479	28,479
2007	합 계	157	30,407	30,407
	• 일반회계	157	30,407	30,407
	• 특별회계	0	0	0
2006	합 계	0	0	0
	• 일반회계	0	0	0
	• 특별회계	0	0	0

⑶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① 이용 관련

○ 2010회계연도의 경우, 총 118건, 791억 4,100만원의 “예산이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용 사례 중 117건(425억 1,300만원)이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하여 비목간 인건비를 이용한 것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1건의 이용사례는 주택정비사업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에서 지방채상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366억 2,800만원을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하여 이용한 것이나

- 동 사업은 관련법 개정지연('10. 4.15) 및 건설경기침체, 융자신청저조 등의 사유로 기편성된 예산(1,000억원)의 1.4%인 13억 8,600만원만 집행되고, 회계연도종료 시점에 인접('10.12. 6)하여 예산액의 36.6%인 366억 2,800만원을 이용한 것인 바

- 동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근거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세입자대책비, 주거이전비 등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대규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2010회계연도의 경우와 같이 기편성된 예산이 대규모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는 경기동향 및 법제정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경으로 소요예산을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표 3-56〉 최근 5년간 이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0	합 계	(118)	79,141	△79,141	
	• 일반회계	(117)	42,513	△42,513	인건비부족분 충당
	• 특별회계	(1)	36,628	△36,628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족분 충당
2009	합 계	(184)	10,983	△10,983	
	• 일반회계	(181)	10,564	△10,564	인건비 부족분 충당
	• 특별회계	(3)	419	△419	인건비 부족분 충당
2008	합 계	(194)	42,957	△42,957	
	• 일반회계	(193)	33,457	△33,457	인건비 부족분 충당
	• 특별회계	(1)	9,500	△9,500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 충당
2007	합 계	(116)	7,077	△7,077	
	• 일반회계	(116)	7,077	△7,077	인건비 부족분 충당
	• 특별회계	-	-	-	
2006	합 계	(245)	7,788	△7,788	
	• 일반회계	(241)	7,738	△7,738	인건비 부족분 충당
	• 특별회계	(4)	50	△50	인건비 부족분 충당

○ 예산의 이용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부합되는 절차라 하여도 예산편성시 예산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회계연도개시 이후 예산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 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② 전용 관련

○ '10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283건, 653억 9,200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322억 4,800만원 감소하였음.[11)]

〈표 3-57〉 '10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전년대비 증 감 액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283	65,392	291	97,640	△32,248	△33.0%
일반회계	250	62,197	239	78,484	△16,287	△20.8%
특별회계	33	3,195	52	19,156	△15,961	△83.3%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표 3-58〉 실·본부·국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용액		전용건수
계	65,392	(100.0)	283
복지건강본부	17,566	(26.9)	71
도시안전본부	11,821	(18.1)	8
여성가족정책관	7,650	(11.7)	36
한강사업본부	7,081	(10.8)	19
소방재난본부	4,003	(6.1)	6
맑은환경본부	3,661	(5.6)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191	(4.9)	26
재무국	2,448	(3.7)	5
도시교통본부	1,631	(2.5)	22
경제진흥본부	1,497	(2.3)	16
주택본부	1,325	(2.0)	4
행정국	1,112	(1.7)	10
푸른도시국	808	(1.2)	15
시립대학교	613	(0.9)	11
기획조정실	519	(0.8)	5
정보화기획단	286	(0.4)	6
시민소통기획관	140	(0.2)	2
인재개발원	24	(0.04)	1
도시기반시설본부	9	(0.01)	1
시립미술관	7	(0.01)	2
의회사무처	0.1	(0.00)	1

주1) ( )는 전체 전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예산현액(8,980억 8300만원)의 0.4%인 38억 9,700만원이 전용됨

11) 2010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283건, 653억 9,2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보다 전용된 예산이 322억 4,800만원 감소하였음.

○ 예산전용이 발생한 주요 사업은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풍수해피해복구 사업은 2010년 8월 태풍곤파스와 8~9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선지급한 바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129억 500만원 중 116억 4,9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여 보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전용한 것임

-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지하철도우미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시비부담분 26억원 확보하고자 불용이 예상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12]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용한 것임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2.75%) 및 수급자 증가[13]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대응편성되는 시비를 확보하고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에서 20억원,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사업에서 12억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37억원을 전용한 것임

〈표 3-59〉 주거급여 전용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예산과목)	감	증	비고
주거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704	
저소득시민부가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		지원대상학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55,793명→45,012명)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204		일자리창출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절감대상사업으로 전액 미집행
세계빈곤퇴치의날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	△200		행사주관사 공모결과 신청자없어 전액 미집행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집행잔액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200		집행잔액

12) 동 사업은 당초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목표를 200개소에서 150개소로 조정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었음

13) 2009년도의 경우, 월평균 일반수급자가 194,608명이었으나 2010년도의 경우, 198,938명으로 4,330명 증가하였음

-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14]은 연말 예산심사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소요액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2010회계연도의 경우, 693억원)만을 편성하고 부족분 146억원은 추경 등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서 10억원 등을 전용하여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임

〈표 3-6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전용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통계목)	감	증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417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보조) (민간자본보조)	△517		당초 금천인영실버 신축비 가내시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예산절감
노인데이케어센터설치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800 △2,100		노인데이케어센터설치에 민간자본 참여로 예산절감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자치구건립수요 미확정으로 집행유보

- 동 전용 사례의 경우,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지출원인이 해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나 불용액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지출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지 않고 이른바 서울형 복지사업 등 프로젝트성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나 대규모의 법정지출 사업을 고의적으로 부족하게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추경이나 전용, 예비비 등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에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오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될 경우,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조치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소관 시립승화원 건물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당초 옥외에 설치 예정이던 봉안시설을 실내로 조정하고자 노인데이케어센터 건립사업에서 15억원을 전용한 것임

14)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시에서 분담하는 비용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소관 제2유스호스텔(하이서울유스 호스텔) 건립 사업의 자산및 물품취득비 17억 2,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은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유스호스텔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직접 구입 관리하여 유스호스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임

-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소관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 15억 900만원이 청소차 구입보조금 및 연료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2010년 8월 9일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가스연료통 폭발사고 후 노후CNG차량 조기교체를 위하여 기내시된 국비 15억 900만원이 천연가스버스구입보조금으로 교부되었고, 추가로 천연가스 버스구입을 위하여 국비가 교부(31억원)됨에 따라 대응편성될 시비부담액 46억 4,7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서 18억 3,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4,500만원을 예산변경하고, 23억 6,500만원을 지출내역간 조정하여 시비부담금을 확보한 것임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증가[15]와 교육비 지원대상 증가[16]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고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에서 10억 3,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한강사업본부 소관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17]은 여의도, 뚝섬, 반포, 난지, 잠실, 이촌, 양화권역 특화사업은 권역별로 384억원(양화권역)에서 958억원(잠실권역)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

〈표 3-61〉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전용 현황

(단위:백만원)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2010예산액				2010집행액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40,200	14,645	5,765	60,610	35,626	21,006	3,978
여의도권역	6,000	4,902	683	11,585	11,547		38
뚝섬권역	4,500	-	4,086	8,586	8,507		79
반포권역	-	130	-	130	127		3
난지권역	-	6,466	996	7,462	6,994		468
잠실권역	10,000	1,362	-	11,362	3,518	7,105	739
이촌권역	9,000	1,118	-	10,118	2,536	6,732	850
양화권역	10,700	667	-	11,367	2,397	7,169	1,801

15) 2009년도 17,777세대에서 2010년도 19,773세대로 1,996세대 증가
16) 2009년도 10,388명에서 2010년도 10,909명으로 526명 증가
17) 동 사업은 배후지와 주변환경에 맞는 특성있는 한강시민공원을 조성하여 한강공원의 이용활성화 및 한강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그러나 한강공원 특화사업중 뚝섬권역 특화사업의 경우, 암사동 보행녹도조성사업에서 당초예산(45억원)과 동일한 규모인 40억 8,600만원을 전용한 바 이는 예산심사시 확보하지 못한 소요예산을 전용이라는 편이적 수단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례로 사료됨

- 다만,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 특화사업의 경우,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2010년 상반기중 권역별 특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기편성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함으로써 사업비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부족예산을 **암사동 보행녹도조성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18]은 연계사업 미확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73억원)의 79.0%인 57억 6,500만원이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 특화사업에 전용된 바 연계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확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소요예산만 먼저 확보하여 예산편성후 불과 수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5월에 기편성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태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지난 2009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의 시설비중 32억 300만원을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에 전용한 사례가 있어 한강공원 특화사업에 있어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은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 한강사업본부가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한강사업본부가 시설비부족분을 전용하여 집행한 유사 사례와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인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의 "미디어아트 갤러리(MAG) 관람석 조성공사"에는 동 사업과 무관한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의 예산중 12억 2,3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19] 지적된 바

- 세부사업명이 달라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장 방침(제517호, '10. 5.11)으로 무관한 사업에서 소요예산을 집행토록 결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시한 것은 물론 결산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 행태로 사료됨

---

18) 서울 강동구 암사동 164번지 일대 강변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배후 주거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녹도를 설치, 주변 암사선사주거지, 암사역사생태공원과 연계하여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

1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 2011. 6. pp.39~41.

-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이 한강사업본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돈주머니 역할을 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향후 보행녹도조성사업은 추경이나 본예산편성시 전액감액조치하고,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여 회계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예산전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회가 의결한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이나 불용액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업비 확보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며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세밀히 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용, 이용, 이체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회가 심사하고 승인한 당초예산안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임

〈표 3-62〉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	증		
도시안전본부	풍수해 피해복구	12,905	11,650		10.12.24.	재해구호 선집행후 국고보조금 기금전출을 위해 전용
	풍수해 피해복구	-	0	11,650		
한강사업본부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7,000	3,967	-	10.05.18.	추가사업비 확보
	한강공원 뚝섬권역 특화사업	4,500	0	3,967		
복지건강본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3,835	2,600	-	10.09.08.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노인일자리사업	26,791	0	2,600		
소방재난본부	인건비	16,694	2,587	-	10.11.15.	인건비(보수) 부족분 조치
	인건비	271,119	0	2,587		
복지건강본부	노인 Day-Care센터 설치	12,800	2,100	-	10.12.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69,374	0	2,100		
복지건강본부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7,681	2,000	-	10.11.03.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주거급여	92,127	0	2,000		
맑은환경본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9,350	1,838	-	10.12.06.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7,277	0	1,838		
복지건강본부	노인 Day-Care센터 설치	12,800	1,500	-	10.11.12.	내진설계 반영등 추가사업비 확보
	시립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	2,849	0	1,500		
여성가족 정책관	제2유스호스텔 건립	1,725	1,725	-	10.12.08.	위탁운영기관이 집기 비품등을 직접 관리할수 있도록 과목변경
	제2유스호스텔 건립	-	0	1,725		
복지건강본부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1,204	1,204	-	10.11.15.	기초생활보장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주거급여	92,127	0	1,204		
여성가족 정책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18,986	1,030	-	10.12.29.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19,763	0	1,030		
재무국	인건비(통합편성)	157,390	1,018	-	10.02.23.	성과상여금 부족분 전용
	인건비(통합편성)	7,724	0	1,018		
복지건강본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2,000	1,000	-	10.12.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69,374	0	1,000		

〈표 3-63〉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	증		
복지건강본부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9,442	920	-	10.07.30.	내진설계 반영등 추가사업비 확보
	공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139	0	920		
한강사업본부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7,000	900	-	10.05.18.	추가사업비 확보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	0	900		
재무국	인건비(통합편성)(기타직보수)	12,851	900	-	10.10.27.	직급보조비 부족분 확보
	인건비(통합편성)(직급보조비)	7,132	0	900		
복지건강본부	노인 Day-Care센터 설치	6,600	800	-	10.12.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으로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69,374	0	800		
주택본부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9,539	786		10.05.11.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용역추진
	재건축소형주택 매입(연구용역비)	0		786		
여성가족 정책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18,986	714		10.09.08.	2010년 신설국고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시비부담분 확보 사업시행계획통보 (2010.2.3.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872		714		
한강사업본부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7,000	637		10.05.18.	추가사업비 확보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5,950		637		
소방재난본부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736	631		10.11.15.	소방차량유지관리비 부족분 확보
	소방차량 유지관리	2,412		631		
소방재난본부	인건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694	600		10.12.16.	인건비 과부족 조정
	인건비(보수)	271,119		600		
여성가족 정책관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2,400	590		10.12.06.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보육돌봄서비스	75,898		590		
도시교통본부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위탁관리(공공운영비)	1,148	578		10.03.25.	공공요금 관리체계 개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위탁관리(민간위탁금)	4,771		578		
복지건강본부	양천메디컬센터 운영보조	4,000	576		10.07.28.	내진설계 반영등 추가사업비 확보
	공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139		576		
여성가족 정책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3,360	568		10.12.06.	국고 추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보육돌봄서비스	75,898		568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5,828	517		10.12.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69,374		517		

⑷ 예비비 관련

○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805억 7,900만원중 1,231억 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1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64〉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전년대비 증 감 액
예 산 액	180,579	143,034	37,545
지출결정액	123,163	83,947	39,216
지 출 액	111,123	77,658	33,465
지 출 건 수	68	77	△9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표 3-65〉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건수
계	123,163 (100.0)	111,123	3,658	8,381	68
기획조정실	34,000 (27.6)	34,000	0	0	1
경제진흥본부	28,530 (23.2)	24,119	0	4,411	4
복지건강본부	12,056 (9.8)	11,367	0	689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9,792 (8.0)	9,747	0	45	3
도시안전본부	9,410 (7.6)	9,410	0	0	10
재무국	8,677 (7.0)	8,677	0	0	2
푸른도시국	9,001 (7.3)	4,754	3,658	589	8
행정국	6,217 (5.0)	4,244	0	1,973	8
도시기반시설본부	1,467 (1.2)	1,462	0	5	5
도시교통본부	1,264 (1.0)	1,220	0	44	10
정보화기획단	1,014 (0.8)	989	0	25	3
한강사업본부	830 (0.7)	813	0	17	2
소방재난본부	242 (0.2)	237	0	5	1
맑은환경본부	85 (0.07)	63	0	22	1
기술심사담당관	28 (0.02)	22	0	6	1
여성가족정책관	550 (0.4)	0	0	550	1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건, 2,100백만원, 상수도사업 3건 / 2,812백만원) 제외

○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중 지출결정된 68건을 성격이 유사한 세부사업으로 범주화시킬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의 인건비성 경비, G20 정상회의지원, 태풍(곤파스)피해복구,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수요예측오류에 따른 부족예산편성,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에 예비비를 지출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G20 정상회의 지원과 관련하여 방침(서울특별시장-제187호, '10. 4.20) 등으로 총 10개 세부사업(19개 통계목)에 대하여 160억 1,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35억 2,000만원을 지출한 바

- 동 행사의 제반여건이 미확정되어 소요예산을 미리 편성치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G20 정상회의가 2010년도에 개최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에도 "G20정상회의지원단 행사지원반"(행정국 소속) 소관예산으로 12억원을 기편성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만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 물론 G20정상회의가 범국가적 행사이나 개최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며 불과 수 일간 개최된 행사에 지원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미리 당초예산이나 추경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과정인 바 서울시가 의회의 예산심사권능을 무시한채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G20 정상회의 지원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과 같이 그동안 서울시가 예비비의 지출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된 바 서울시는 예비비의 지출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회는 자의적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비비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표 3-66〉 G20 정상회의 관련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소관 실·국
소 계	16,012	13,523	2,489	15.5	
포장도로 유지보수	8,194	8,194	-	0.0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3,046	1,433	1,613	52.9	행정국 G20정상회의지원단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925	1,925	-	0.0	푸른도시국 조경과
G20정상회의 대비 U-쉘터 설치	1,014	989	25	2.5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담당관
G20 정상회의 기념 세계 여성지도자 포럼	550	-	550	1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G20정상회의 대비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420	420	-	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G20 정상회의 의료지원 대책	286	12	274	95.8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	250	250	-	0.0	푸른도시국 조경과
G20정상회의 소방안전 및 테러대책	242	237	5	2.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G20정상회의 대비 깨끗한 서울 만들기	85	63	22	25.9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그 외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소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0. 5월부터 운영되어 당해연도 서울시 출연 분담금을 확보하고자 예비비에서 340억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한 것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예비비 235억 4,500만원을 지출한 것은 희망근로사업 종료로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1억 2,000만원, 재료비 78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각각 192억 200만원, 43억 4,200만원을 지출한 바

○ 예비비가「지방자치법」제129조와「지방재정법」제43조[20]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 하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미 소요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집행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과욕으로 소요예산을 예비비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예비비 편성취지에 반하여 지출결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년도 본예산 심사시 편성 요청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명문화시켜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는 지출결정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예비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 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 : 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표 3-67〉 주요 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결정액 8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소관 실·국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34,000	34,000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1/4분기)	기획조정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956	23,545	4,4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경제진흥본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9,719	9,719	0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문화체육관광 디자인본부
생계급여	8,879	8,684	195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수요예측오류에 따른 급여부족액	복지건강본부
일시차입금 이자	8,500	8,500	-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재무국
포장도로 유지보수	8,194	8,194		G20정상회의 대비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 및 주요동선 노후아스팔트 포장	도시안전본부
시공원(도시계획시설) 수해지역 복구	5,231	1,184 (3,658 이월)	389	시공원내 수해지역 긴급복구	푸른도시국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3,046	1,433	1,613	G20정상회의 지원	행정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925	1,925	-	G20 정상회의 지원	푸른도시국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1,693	1,353	340	시청사 에너지절감계획 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행정국
태풍(곤파스) 피해 복구	1,396	1,235	161	태풍(곤파스) 피해 복구	푸른도시국
통합 연금부담금	1,226	1,226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3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예비비 사용	행정국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1,195	1,194	1	양천메디컬센터 토지매입비 부족액	복지건강본부
도시철도 8호선 건설	1,163	1,163	-	지하철 8호선 공사대금 소송 관련 서울고법의 화해확정된 판결금 지급	도시기반 시설본부
G20정상회의 대비 U-쉘터 설치	1,014	989	25	G20정상회의 지원	정보화기획단

⑸ 명시이월 관련

○ 2010회계연도의 경우, 계속비이월은 없으나 명시이월은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인 장애인 전용수련원 건립(명시이월액 35억 1,700만원), 제2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명시이월액 5억원) 이상 2개 사업, 40억 1,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시 “201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여 의결한 것임[21)]

〈표 3-68〉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이월률(%)
			세부사업수	금 액	
2010	**계**	**22,515,390**	**2**	**4,017**	**0.02**
	일반회계	15,902,400	2	4,017	0.03
	특별회계	6,612,990	0	0	0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예산감시권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임

○ 다만,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2건의 명시이월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의 성격상 사고이월보다 예산집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바 의회의 의결을 확보한 사업이라 하여도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⑹ 사고이월 관련

○ 2010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8,792억 1,900만원으로 ’09회계연도보다 502억 7,200만원 감소하였음.

---

21) 명시이월의 경우, ′99회계연도 3건, 43억 8800만원, ′00회계연도 2건 23억 9,200만원, ′02회계연도 7건, 1,841억 2,500만원 발생한 사례가 있음.

〈표 3-69〉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구 분	예 산 현 액	사 고 이 월		이월률 (%)
			건 수	금 액	
2010	**계**	**22,515,390**	**632**	**879,219**	**3.9**
	일반회계	15,902,400	280	345,252	2.2
	특별회계	6,612,990	352	533,967	8.1
2009	**계**	**25,338,774**	**730**	**929,491**	**3.7**
	일반회계	17,465,623	357	288,283	1.6
	특별회계	7,873,151	373	641,208	8.1
2008	**계**	**21,841,177**	**987**	**1,184,968**	**5.4**
	일반회계	14,815,041	466	394,556	2.7
	특별회계	7,026,136	521	790,412	11.2

①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검토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표 3-70〉와 같이 분류할 경우, 전체 사고 이월액의 35.0%인 3,083억 9,600만원이 절차지연(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바 만일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였다면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70〉 최근 5년간 사고이월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총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도시계획등 절차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유관사업 지연	기 타
2010	879,220 (100.0)	135,293 (15.4)	308,396 (35.0)	146,823 (16.7)	148,160 (16.9)	68,831 (7.8)	71,717 (8.2)
2009	929,491 (100.0)	116,294 (12.5)	368,811 (39.7)	113,765 (12.2)	106,279 (11.4)	93,518 (10.1)	130,824 (14.1)
2008	1,184,968 (100.0)	110,734 (9.3)	459,856 (38.8)	208,408 (17.6)	180,943 (15.3)	79,234 (6.7)	145,793 (12.3)
2007	866,774 (100.0)	62,227 (7.2)	372,660 (43.0)	134,231 (15.5)	153,977 (17.8)	4,199 (0.5)	139,480 (16.1)
2006	565,445 (100.0)	161,390 (28.5)	179,290 (31.7)	21,494 (3.8)	118,971 (21.0)	20,988 (3.7)	63,312 (11.2)

○ 특히, 도시안전본부 소관사업중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건설 사업은 공사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1,699억 7,400만원)대비 6.1%인 103억 9,600만원(시설비 101억 3,400만원, 감리비 2억 62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에 각각 각 96억 4,200만원, 302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예결특위 결산심사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10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은 소관부서가 사고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소요예산만 번번이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부서에 만연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심사시 감추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소관) 사업의 경우,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시설비 예산현액 184억 4,600만원의 16.1%인 29억 6,2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나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2009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212억 7,000만원)의 40.6%인 86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어 사업주관부서가 매년 동일한 문제로 사고이월 및 불용액[22]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문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사업추진일정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집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②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검토

○ 한강공원 특화사업중 잠실권역 특화사업에서 71억 500만원, 이촌권역 67억 3,200만원, 양화권역 71억 6,900만원이 설계기간 추가소요 및 공사범위 재조정에 따른 발주지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 특히, 잠실권역 및 이촌권역 특화사업의 경우, 지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동 사업이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사고이월 시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10회계연도에도 소요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발주지연 등으로 대규모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소관부서가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행태로 사료되는바 향후 추경예산안이 제출될 경우, 관련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표 3-71〉 한강공원 특화사업중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한강공원	2010			비고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비율)	
잠 실	11,362	7,105	(62.5)	'09. 1~'13. 4
이 촌	10,118	6,732	(66.5)	'09. 1~'13. 4
양 화	11,367	7,169	(63.1)	'09. 1~'11. 5

○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소관)는 추가공사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예산현액(424억 4,800만원)의 20.1%인 85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22) 2010회계연도의 경우, 시설비 예산현액대비 20.0%인 36억 8400만원이 불용됨

- 동 사업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는 있으나 지난 2009회계연도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227억 500만원)의 36.3%인 82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는 바

- 시립의료기관의 현대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여도 소요재원이 세금에 기초하고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간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일시에 편성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연말에 소요예산을 서둘러 편성하고, 시의회에 예산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이를 집행부가 변경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은 물론 공기연장 등으로 소요예산 증액이라는 부정적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초 사업을 계획하며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변동 가능한 요인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 중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③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 발생비율이 높은 사업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2,404억 5,200만원)의 22.7%인 545억 3,800만원(국고보조금)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연말('10.12.21)에 교부되어 보조금이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도금중 연내 집행가능한 부분(54억 5,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45억 3,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나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2009회계연도에도 임대주택 매입비 115억 8,100만원을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례가 있고, 2010회계연도에도 194억 2,100만원이 불용되어 기편성된 예산현액중 사고이월과 불용된 예산을 합할 경우, 예산현액의 30.8%에 해당하는 739억 5,900만원인바,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국비반납을 회피하고자 사고이월을 선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되며 그 원인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하나 사업목적이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에 국비가 조기배정 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디자인파크부)은 문화재 발굴 및 이전, 품질관리 확보 등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예산현액(974억 4,900만원)의 45.8%인 446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은 예산현액(585억 7,000만원)의 57.2%인 335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이는 건설공사(918~923공구) 지연으로 시설비 333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감리용역에 따른 본공사 지연(922~923공구)으로 감리비 2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용역 및 도로확장 공사 발주 지연 및 본공사 지연 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현액(315억 7,100만원)의 84.0%인 265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의 경우에도 예산현액(1,108억 6,100만원)의 15.8%인 174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이는 건설공사(915~917공구) 지연으로 시설비 166억 9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감리용역에 따른 본공사 지연(915~917공구)으로 감리비 7억 5,9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바 이미 지난 2009회계연도에도 토목공사 지연으로 예산현액(1,278억 4,200만원)의 41.2%인 527억 4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례가 있음

- 동 사업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소요예산을 산정함으로써 기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예산편성당시 과거 사고이월 발생원인과 예산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연도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는 예산심사시 앵커시설에 대한 매입을 지양하고, 신축·임차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방침(행정1부시장-제176호, '10. 4. 2)으로 성수 IT지구에 300억원, 종로 귀금속지구에 20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현액(500억 1천만원)의 33.9%, 169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 152억원이 사고이월 된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임차대상 건물 선정 및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 등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이나 통상 예산편성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기편성된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일정을 과다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결과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총괄부서가 예산집행 추이를 엄격히 점검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성수 IT지구 사업에서 발생된 사고이월액 17억 5,700만원은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사고이월 발생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일 수 있으나 기추진중인 사업에 정보화기획단의 앱 개발센터가 추가되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조기에 인지하였다면 정보화기획단과 경제진흥본부가 성수 IT지구에 서울앱개발센터[23]를 개설하는 협의('10. 9. 1)를 보다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23) 서울앱개발센터(SADC):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 지원시설로 성수 IT 앵커시설내 2011.5.23.개소

〈표 3-72〉 주요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	이월률	소관부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40,452	166,493	54,538	22.7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97,449	52,416	44,661	45.8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디자인파크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58,570	25,040	33,525	57.2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로로확장	31,571	4,957	26,530	84.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39,030	12,346	25,919	66.4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시설부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30,779	7,467	23,144	75.2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 (도시개발)	27,521	5,840	20,875	75.9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19,548	145	19,136	97.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38,201	20,007	17,893	46.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10,861	84,035	17,478	15.8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	50,010	25,130	16,957	33.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66,457	39,502	16,944	25.5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5,494	29,149	16,299	35.8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34,291	17,866	15,833	46.2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28,138	13,218	14,887	52.9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61,707	47,286	14,366	23.3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9,700	2,186	13,285	67.4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17,207	3,851	13,168	76.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3,390	1,875	11,406	85.2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69,974	159,542	10,396	6.1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10,610	480	10,068	94.9	경제진흥본부 외국인생활지원과

※ 사고이월액(100억원 이상) 발생규모 순임.

(7)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시비 혹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0회계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2조 837억 4,9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2조 442억 8,600만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예산액보다 394억 6,3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고,

○ 실제수령된 예산중 93.7%, 1조 9,162억 1,400만원을 〈표 3-73〉와 같이 집행하였음

〈표 3-73〉 201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집행비율
계	**2,083,749**	**2,044,286**	**1,916,214**	93.7
일반회계	1,451,089	1,422,514	1,403,493	98.7
특별회계	632,660	621,772	512,721	82.5
도시철도	69,302	59,972	43,435	72.4
교통사업	50,877	49,552	32,628	65.8
주택사업	109,006	109,006	54,467	50.0
도시개발	11,368	11,213	9,173	81.8
하수도사업	160	160	0	0.0
의료급여	303,746	303,746	303,460	99.9
한강수질	11,186	11,108	10,204	91.9
광역교통	76,855	76,855	59,194	77.0
재정비촉진	160	160	160	100.0

○ 그러나 〈표 3-73〉과 같이 '1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394억 6,300만원[24]의 부족수령액이 발생한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의 변경이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거나

- 중앙정부에서 과다편성하여 내시하고, 실제 국고보조금을 적게 교부함에 따라 이미 확대편성된 시비도 결과적으로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향후 국비의 실제수령액을 예측하여 시비를 대응편성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할 것임

〈표 3-74〉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2010	계	**2,083,749**	**2,044,286**	**39,463 (1.9)**	**1,916,214 (93.7)**
	일반회계	1,451,089	1,422,514	28,575 (2.0)	1,403,493 (98.7)
	특별회계	632,660	621,772	10,888 (1.7)	512,721 (82.5)
2009	계	**2,285,482**	**2,214,163**	**71,319 (3.1)**	**2,114,325 (95.5)**
	일반회계	1,570,262	1,517,447	52,815 (3.4)	1,481,888 (97.7)
	특별회계	715,220	696,716	18,504 (2.6)	632,437 (90.8)
2008	계	**1,824,042**	**1,789,698**	**34,344 (1.9)**	**1,748,600 (97.7)**
	일반회계	1,030,752	997,854	32,898 (3.2)	957,042 (95.9)
	특별회계	793,290	791,844	1,446 (0.2)	791,558 (100.0)
2007	계	**1,536,051**	**1,512,382**	**23,669 (1.5)**	**1,472,495 (97.4)**
	일반회계	786,205	753,850	32,355 (4.1)	722,943 (95.9)
	특별회계	749,846	758,532	+8,686 (+1.2)	749,552 (98.8)
2006	계	**1,318,003**	**1,278,628**	**39,375 (3.0)**	**1,269,235 (99.3)**
	일반회계	641,365	613,754	27,611 (4.3)	605,314 (98.6)
	특별회계	676,638	664,874	11,764 (1.7)	663,921 (99.9)

24) 국비내시액 대비 부족수령액비율은 1.9%임

〈표 3-75〉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부족수령액 5억원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 령 액	부족수령	소관부서
1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32,000	22,670	9,330	도시기반시설본부
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6,682	2,566	4,116	여성가족정책관
3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8,172	14,338	3,834	복지건강본부
4	희망키움통장	3,311	897	2,414	복지건강본부
5	생계급여	268,578	267,399	1,180	복지건강본부
6	학교 우유급식 지원	4,737	3,638	1,099	경제진흥본부
7	국가예방접종사업	3,999	2,904	1,095	복지건강본부
8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33,593	32,622	971	복지건강본부
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872	936	936	여성가족정책관
1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387	2,581	806	복지건강본부
11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902	137	765	복지건강본부
12	영유아 보육료(보조)	122,519	121,804	715	여성가족정책관
1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5,934	5,296	638	복지건강본부
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1,665	1,037	628	여성가족정책관
15	기초노령연금 지급	336,981	336,357	624	복지건강본부
16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7,200	6,683	517	복지건강본부
17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2,570	2,056	514	도시교통본부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의 경우, 당초 2010년에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차량 구매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차량의 고속화를 위해 차량 및 시스템의 기술적 검토 후 차량구매를 발주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10년도에 차량구매가 곤란하여 예산불용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교부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국비 93억 3,000만원이 미교부된 것임[25)]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수혜대상인 중증장애인 인원을 과다 산정하여 이후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비 38억 3,400만원이 감내시됨에 따라 38억 3,400만원이 부족수령된 것이고, 희망키움통장(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소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국비 24억 1,400만원이 적게 교부된 것이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소관)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과다편성후 감액조치함으로써 당초 내시액보다 41억 1,600만원 축소된 25억 6,600만원만 교부된 바

○ 동 사업 등과 같이 국비 편성에 따른 시비의 대응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된 원인이 서울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바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무조건 시비를 대응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비로 전액 부담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다만, 생계급여(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의 경우, 시·도별 소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축소·변경내시하여 당초보다 11억 8,000만원이 부족수령된 것이라고 하나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서울시가 예비비 86억 8,300만원을 지출한 바

○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오류에 따른 국비 부족지원사례가 발생될 경우, 복지수혜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시비의 추가적인 편성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비의 부족지원에 따라 예비비를 비롯한 시비편성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국비가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5) 부족수령된 국비 93억 3,000만원은 14차 간주처리('10.12.29.)를 통하여 "9호선 3단계 건설"로 교부받았다고 하나 국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입·세출의 변동상황을 보다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었음

⑻ 기금 운용 관련

○ 서울시의 기금은 2002년 18개였으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금을 설치 및 폐지 한 바 있고, 2006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이 신설되어 2010회계연도의 경우, 15개 기금이 운용됨

〈표 3-76〉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기 금 수	15	15	15	15	15
연 도 말 현 재 액	567,274	627,387	946,494	1,296,959	1,065,818

○ 2010년도말 15개 기금의 현재액은 5,672억 7,400만원으로 2009년도말의 6,273억 8,700만원과 비교하여 601억 1,300만원(△9.6%)이 감소하였음

○ 15개 기금의 총수입규모는 4조 1,972억원으로

- 내부거래 수입인 예수금 2,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1,200억원, 감채기금 △3,300억원 등)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3,006억원 등은 감소하고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147억원, 예탁금상환금 7,252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495억원(21.7%) 증가하였음

○ 지출규모는 3조 6,299억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3,550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융자금(3,788억원), 예수원리금상환(1조 288억원)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096억원(28.7%)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수입의 증가율 보다 지출의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현재액 규모는 전년대비 601억 1,300만원(△9.6%)이 감소하였음

〈표 3-77〉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증감액	주요원인
합 계	567,274	627,387	△60,113	
재정투융자기금	209,555	170,537	39,018	· 융자금회수 등 수입요인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87,408	166,955	△79,547	· 예수원리금상환등 지출요인 증가
식 품 진 흥 기 금	7,914	3,902	4,012	· 융자금 등 사업비 지출요인 감소
기후변화기금	36,096	22,321	13,775	· 융자금 등 사업비 지출요인 감소
도로굴착복구기금	15,656	19,454	△3,798	·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전체 수입 및 지출요인 모두 감소
여 성 발 전 기 금	995	1,137	△142	· 공모사업비 등 지출요인 소폭 증가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767	4,360	2,407	· 일반회계 출연금 증가 등 수입요인 증가
사 회 복 지 기 금	11,745	16,124	△4,379	· 수입감소영향에서 지출요인은 증가
체 육 진 흥 기 금	4	-	4	
감 채 기 금	25,026	38,711	△13,685	· 예수원리금 상환도래로 지출 요인 증가
재 난 관 리 기 금	162,936	113,458	49,478	·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 감소
남북교류협력기금	2,158	435	1,723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비 축소등 지출요인 감소
대 외 협 력 기 금	1,014	5,029	△5,029	· 대내외 협력사업비 지출요인 증가
신청사건립기금	0	43,504	△43,504	· '10.1.1자 기금폐지로 결산잉여금 일반회계 편입
한강예술섬건립기금	0	21,453	△21,453	· '10.1.1자 기금폐지로 결산잉여금 일반회계 편입

※ 현재액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연말 예치금 잔액임

○ 15개 기금에서 각 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적 성격의 지출은 총 154개 사업에 지출계획현액이 1조 4,878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2010년 당초 사업예산(16조 6,000억원) 규모와 비교할 때 기금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수량 등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향후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존치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반회계 등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률이 6.1%이나 기금사업의 불용률도 6.2%에 이르고 있어 기금이 해당 목적사업 등에 한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임에도 기금사업의 예산집행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처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목적외 사업에 대한 지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결과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금에 대한 의회의 예산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규모와 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임

⑼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비와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 〈표3-78〉과 같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09회계연도, '10회계연도 연속으로 대규모 결손을 나타내고 있는바

〈표 3-78〉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합계	543	△706	11,254	19,269	24,289
일반회계	**△3,129**	**△2,144**	4,431	11,376	14,450
특별회계	3,672	1,438	6,823	7,893	9,839

○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감추경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건전하다는 홍보만 반복하고 있어 일반회계 결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대단히 안이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결손은 장기적으로 발생가능한 재정변화에 서울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그 만큼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을 단순 세입부족에 따른 결과로 분석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재정의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지균형을 맞추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비록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경기조정 역할도 중요할 것이나 반복되는 결손은 향후 시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다음세대에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시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기획조정실과 재무국의 유기적인 협조와 선(先) 세출부문 구조조정 후(後) 세입부문 보완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표 3-79〉 최종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최종예산 (A)	15,614,118	17,045,196	14,489,716	12,879,837	10,668,181
전년도이월액 (B)	288,283	420,427	325,325	265,522	278,381
예산현액 (C)=(A)+(B)	15,902,401	17,465,623	14,815,041	13,145,359	10,946,562
세입결산액(수납액) (D)	14,634,416	16,359,345	14,792,751	13,798,309	12,108,033
세출결산액(지출액) (E)	14,589,232	16,260,091	13,913,465	12,302,690	10,387,946
잉여금(차인잔액) (F)=(D)-(E)	45,184	99,254	879,287	1,495,619	1,720,087
기존채무상환	0	0	0	0	0
명시이월비	4,017	0	0	0	0
사고이월비	345,252	288,283	394,556	325,325	265,522
계속비	0	0	0	0	0
국고집행잔액	8,825	25,448	41,586	32,717	9,610
순세계잉여금	△312,911	△214,476	443,145	1,137,577	1,444,955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차인잔액) - 기존채무상환 - 각종이월비- 국고집행잔액

⑽ 지방채 관련

〈표 3-80〉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발생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계		**3,245,354**	**1,141,733**	**603,941**	**537,792**	**3,783,146**
일반회계		1,076,800	530,000	392,450	137,550	1,214,350
특별회계	소 계	2,168,554	611,733	211,491	400,242	2,568,796
	기타특별회계	1,851,761	611,733	208,791	402,942	2,254,703
	공기업특별회계	316,793	-	2,700	△2,700	314,093

※ 세입세출외현금, 기타채무 제외

○ 2010년도 지방채 현재액은 3조 7,83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조 2,453억 5,400만원보다 5,377억 9,200만원(16.5%) 증가한 바

-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768억원보다 1,375억 5,000만원(12.7%)증가된 1조 2,143억 5,000만원으로 이는 2010년중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기부양 및 도시철도공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임

- 특별회계[26]는 전년도보다 4,002억 4,200만원이 증가된 2조 5,687억 9,6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029억 4,200만원(21.7%)이 증가한 것으로 전액 도시철도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27억원이 감소한 것임.

○ 서울시의 2010년도말 지방채는 3조 7,83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27] 2010 회계연도(일반회계)에 지방채를 전년도보다 5,350억원 적은 5,300억원을 발행한 바, 서울시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채 발행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와 달리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어 지방채 발행규모를 당초보다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26) 지방채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와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임

27) '09년 3조 2,453억원, '08년 1조 8,563억원, '07년 1조 3,631억, '06년 1조 1,462억원임

○ 다만,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기재된 “향후 5년간 지방채증권 상환계획(p.62)”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없다고 하나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대규모 결손('09회계연도 △2,144억, 10회계연도 △3,129억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실물경기가 둔화되어 세입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의 기대나 예측과는 달리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순탄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연간 상환스케쥴 등을 정밀히 검토하여 현세대의 채무가 다음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들의 부채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건전한 재정기조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바 불요 불급한 전시성, 일회성 사업과 대규모 토목사업과 같은 낭비성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채권발행을 통해 주요재원을 조달 하는 사업은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야 할 것임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부대의견 : 별첨

별 첨

부 대 의 견

❑ 총괄

첫째, 서울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연속 결손된 것에 대해서 세입여건이나 지방채 상환계획을 조정할 것

둘째,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률이 중앙정부보다 3배나 높은 1조 6,539억원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내 불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

셋째, 그동안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불균형적인 재정상태에 대하여 편성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출규모에 세입규모를 맞추는 선후가 역전된 예산편성을 근절할 것

넷째, 불용액 및 사고이월의 과다한 발생, 예산의결 후 진행된 자의적인 예산전용, 인건비 등 예측가능한 부문에 대한 이용 및 예비비 집행 등의 관행을 개선할 것

다섯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반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과 이행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

❑ 시정요구 사항

○ 행정국

-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적기 교부를 통하여 자치구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재무국

- 세입의 총괄부서로서 과학적인 세입추계와 징수를 통하여 세입확보에 보다 노력할 것
-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에 대해 과오납반환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당초 징수결정된 시세 세입예산이 적기에 징수되어 미수납 발생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시세체납 사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기획조정실

-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각 실·국 등에서 예산의 이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할 것
-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것
- 예비비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인바 자의적이며 편의적인 지출결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지방채 발행에 앞서 서울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간 상환스케쥴 등을 정밀히 검토하여 현세대의 채무가 다음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 경제진흥본부

-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측이 수년간 동일하여 의도적인 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불용예산이 매년 본부 전체 예산의 8% 수준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용액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치구와의 매칭사업이 자치구 재정부담 가중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점점 약화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바 재투차입금이나 은행 이자 보전금이 확대되고 있어 기금 건전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사고이월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총괄부서가 예산집행 추이를 엄격히 점검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할 것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사업중 종로 귀금속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있어 설치대상 건물이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이 곤란함에 따라 대상 부지 변경 등 신축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정보화기획단

- 데이터센터 인건비 과다 계상 문제점 개선할 것

○ 교육협력국

- 예산의 과도한 불용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

○ 시립대학교

- 기성회비 수입중 국고보조금 증대방안 마련할 것

○ 푸른도시국

- G20 정상회의 관련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녹지량 확충(1,925백만원)」 및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250백만원)」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급성을 사유로 자의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

- 영등포정수장재건설(1,2공장) 및 고도 정수처리공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사유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불용시킨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후 예산절감 부분을 모색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시 예산절감요인을 미리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 맑은환경본부

- G20 정상회의 관련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G20정상회의 대비 깨끗한 서울만들기(63백만원)」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급성을 사유로 자의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한강사업본부

- 세빛둥둥섬이나 여의도요트마리나 조성사업 등 민자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 하천점용료가 징수되지 않아 세입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바, 공사기간, 실제 점용기간을 고려하여 부과 징수할 것
-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법적 근거없이 본부장 방침만으로 시재정을 투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47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
- G20 정상회의 관련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G20정상회의 대비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420백만원)」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급성을 사유로 자의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암사동보행녹도조성 사업의 경우와 같이 의회가 의결한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비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확보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한강 전망카페 응급복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용한 것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전망카페의 관리책임이 있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여야할 복구 비용을 전용이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전용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시민소통기획관
- '무상급식 반대 광고' 게재와 같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예산을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여성가족정책관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 중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서울키즈센터 건립공사 계속비로 편성할 것

○ 복지건강본부
- 수년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정교한 예산의 편성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이용, 전용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사회복지시설 건립등 사업완료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다음연도이월시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것
- 사회복지관련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교부되고,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비와 매칭편성된 시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전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
-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장애인전용수련원 건립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 복지보건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립이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되어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수납을 출납폐쇄일까지 수행 완료하여 다음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징수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도시안전본부
-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G20 정상회의 대비 아스팔트포장 및 도로정비를 위한 "포장도로 유지보수(3회)"에 81억 94백만원 지출한 것은 당시 서울시가 G20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해왔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G20 정상회의는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므로 준비에

투입되는 비용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어야 하며, 강북처럼 포장이 열악한 지역이 있음에도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강남지역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예비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을 자의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금의 설치목적과 무관한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멀쩡한 도로포장에 투입한 것은 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향후 도시안전본부는 예비비 및 기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할 것
- 불용액(특히 전액 불용액 사업),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등이 과다하므로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 할 것
- 세입예산의 경우 고질적 체납이 매년 연례적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초기대응 등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기반시설본부

- 세입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 결정액이 과도하게 높은 바, 이는 도시철도국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건비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철도국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항목에 대해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라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 시설비 45백만원을 '동대문주변 이전예정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은 2010년 의회 예산 승인 당시 예산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시계획용역사업을 공사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끼워 넣기 식의 변칙적 사업추진에 해당하는 바, 이와 같은 예산변경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도시계획국

- 사업변경은 시가 적절하게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시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당초 사업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사업예측과 면밀한 계획수립이 부족한 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감독을 저하시키므로 예산단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도시계획국의 이월사업은 각종 학술·기술용역, 보상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관례답습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향후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 할 경우에도 명시이월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세입추계를 보다 면밀히 할 것. 도시계획국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 특별회계를 당초 취지에 적합하도록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 할 것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잠실운동장 주차장 위탁 계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업체 선정시 입찰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자금과 운영 능력 있는 자를 선정하고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 받아 세수의 일실과 적기 징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위수탁계약 단계에서 부터 세수 일실이 없도록 채권확보에 충실할 것이며 지연징수 방지 및 조기에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과 실효성 있는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민간 위탁업체의 불법 영업의 원천봉쇄 및 세수관리와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주택본부

- 주택본부의 경우, 전용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약화시키고 예산규모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매년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및 불용되는 사업이 다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강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민원 및 보상에 대한 협상기술 향상,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기법 개발 등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률이 40%를 상회하는 것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음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노력, 적극적인 대민협상 노력 및 기술 향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이월사업은 각종 학술·기술용역, 보상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관례답습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향후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 할 경우에도 명시이월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특별회계를 당초 취지에 적합하도록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 할 것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주택정비사업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에서 불용, 사고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본부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2천억원을 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에는 진행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교통방송본부

- 교통방송의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2010년 결산의 실제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바 세수예측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바 해당 집행사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6개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라디오 이동 스튜디오를 구매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 요구 사항

○ 한강사업본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의 예산중 일부를 본부장 방침으로 플로팅아일랜드 “미디어아트 갤러리(MAG) 관람석 조성공사”에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킨바 재정운영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요구

○ 시립역사박물관

- 3개 임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임대수입)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수납하지 않고, 일부를 대관료에 해당하는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바 관리감독 소홀 및 회계질서오류에 대한 감사요구

○ 시립미술관

- 2010회계연도에 개최한 2개 특별전의 입장료 수입 배분비율이 상이한 바 공동주최사에 대한 특혜여부 및 약정서 체결과정, 수입배분비율 결정방식 등 시립미술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요구

○ 푸른도시국

- 2010회계연도 예산심사시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감사요구

- 노을카페 설치, 월드컵공원 해치미로 설치, 노을공원 소리 테마파크 등의 사업은 2009년도 9·10월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되어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적기집행을 낙관할 수 없음에도 선행절차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편성예산 대부분을 불용시킨 바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하여 감사요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366

제출일자 : 2011. 6.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14조 6,344억 1천6백만원
- 세출 결산액 14조 5,892억 3천2백만원
- 차 인 잔 액 451억 8천4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3,452억 5천2백만원과 명시이월액 40억 1천7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억 2천5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9억 1천1백만원임.

(2)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5조 4,229억 7백만원
- 세출 결산액 4조 6,222억 9천2백만원
- 차 인 잔 액 8,006억 1천5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4,758억 8천9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천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7억 3백만원임.

(3) 공기업회계(지역개발기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0회계연도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은

가) 세입예산결산

- 수익적수입 6,079억 8천만원
- 자본적수입 1,370억 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및미수금 262억 4천7백만원
- 이월재원충당액 970억 8천3백만원
◦합 계 8,683억 1천4백만원임

나) 세출예산결산

- 수익적지출 3,826억 8백만원
- 자본적지출 2,966억 1천4백만원
- 이월예산지출 874억 8천7백만원
◦합 계 7,667억 9백만원임

다) 자금결산

- 전기이월액 1,079억 7천7백만원
- 수 입 7,603억 3천7백만원
- 지 출 7,667억 9백만원
◦이 월 액 1,016억 5백만원임

라) 자 산

2010회계연도 말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5조 4,526억 8천2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5조 2,540억 4천만원에 비하여 1,986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1,730억 1천만원
- 투 자 자 산 3,064억원
- 가동 설비 자산 4조 5,483억 3천9백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4,188억 6천만원
- 무 형 자 산 28억 5천6백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32억 1천7백만원임

마) 부 채

2010회계연도 말 현재의 부채는 6,727억 9천8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4,990억 9천 8백만원에 비하여 1,737억원 이 증가되었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동부채 1,263억 2백만원
- 고정부채 5,464억 9천6백만원임

바) 자　　본

2010회계연도 말 현재의 자본총액은 4조 7,798억 8천3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4조 7,549억 4천2백만원에 비하여 249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결산 내용은

- 자 본 금　　2,582억 7천9백만원
- 자본잉여금　　3조 5,374억 9천3백만원
- 이익잉여금　　9,841억 1천1백만원임

사) 손　　익

2010회계연도 말 당기순이익은 446억 6천9천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478억 7천만원에 비하여 32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 수　　익　　6,379억 6천9백만원
- 비　　용　　5,933억원
- 당기순이익　　446억 6천9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0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672억 7천4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말 5,899억 8천9백만원에 비하여 227억 1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5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 재정투융자기금　　2,095억 5천5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874억　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79억 1천4백만원
- 기후변화기금　　360억 9천6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56억 5천6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9억 9천5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7억 6천7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117억 4천5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4백만원
- 감채기금　　250억 2천6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629억 3천6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21억 5천8백만원
- 대외협력기금　　10억 1천4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0원
- 한강예술섬건립기금　　0원임

다. 채권현재액

2010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조 5,424억 9천2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말 3조 7,250억 5천6백만원에 비하여 1,825억 6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은

- 일반회계 1,842억 3천9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2,484억 1천1백만원
- 공기업회계 1,443억 1천2백만원
- 기금 2조 9,655억 3천만원임

라. 채무결산

2010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조 8,177억 1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말 3조 2,453억 5천4백만원에 비하여 5,723억 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1조 2,173억 5천만원
- 기타특별회계 2조 2,687억 3백만원
- 공기업회계 3,316억 4천8백만원임

마. 예비비 지출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377억 4천3백만원
- 지출 결정액 1,128억 7천8백만원
- 지 출 액 1,049억 3천6백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79억 4천2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 31건임

(2)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428억 3천6백만원
- 지출 결정액 102억 8천5백만원
- 지 출 액 61억 8천8백만원
- 이 월 액 36억 5천8백만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4억 3천9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도시철도 8호선 건설,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시공원(도시계획시설) 수해지역 복구 등 6건임

(3)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3억 5천만원
- 지 출 결 정 액 49억 8천7백만원
- 지 출 액 49억 1천2백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중 집행잔액은 7천5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상수도 GIS 구축 등 4건임.

바. 재무회계 결산

(1) 2010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19조 3,526억 6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118조 7,364억 8천9백만원에 비하여 6,161억 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3조 1,552억 2백만원
- 투 자 자 산 14조 3,651억 3천7백만원
- 유 형 자 산 101조 6,648억 9천6백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1,673억 7천1백만원임

(2) 2010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4조 9,794억 5천9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4조 6천851억 4천2백만원에 비하여 2,943억 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부 채 1조 5,850억 5천7백만원
- 장기 차입 부채 3조 2,219억 6천1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1,724억 4천1백만원임

(3) 2010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14조 3,731억 4천 6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114조 513억 4천7백만원에 비하여 3,217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 정 순 자 산 98조 2,359억 8천2백만원
- 특 정 순 자 산 3조 927억 9천8백만원
- 일 반 순 자 산 13조 443억 6천6백만원임

(4) 2010회계연도 운영차액은 8,782억 4천9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5,588억 6천3백만원임에 비하여 1조 4,371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17조 8,224억 4천7백만원
- 비 용 16조 9,441억 9천8백만원
- 운 영 차 액 8,782억 4천9백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50조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 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재정법 제52조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바. 지방재정법 제5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자. 지방공기업법 제35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작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① 검사위원은 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 회계별	예산현액 (A)	세입·세출결산					다음년도이월비					순세계잉여금 (G)=B-E	집행잔액	
		차인잔액 (B)=C-D	세입결산 (C)	결산율	세출결산 (D)	결산율	소계 (E)	이월율	명시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 (F)		(H) =A-D-E+F	잔액율
합계	22,515,391	947,404	20,925,637	92.9%	19,978,233	88.7%	893,086	4.0%	4,017	879,220	9,849	54,318	1,653,921	7.3%
일반회계	15,902,401	45,184	14,634,416	92.0%	14,589,232	91.7%	358,094	2.3%	4,017	345,252	8,825	△312,911	963,900	6.1%
특별회계	6,612,990	902,220	6,291,221	95.1%	5,389,001	81.5%	534,992	8.1%	0	533,968	1,024	367,229	690,021	10.4%
기타	5,712,707	800,615	5,422,907	94.9%	4,622,292	80.9%	476,913	8.3%	0	475,889	1,024	323,703	614,526	10.8%
공기업	900,283	101,605	868,314	96.4%	766,709	85.2%	58,079	6.5%	0	58,079	0	43,526	75,495	8.4%

※단위환산과정(반올림등)에서소계등일부수치는오차가발생함.

○ 채권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09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			2010년도말 현재액
		계	증가	감소	
합계	3,725,056	△182,563	1,255,954	1,438,517	3,542,493
일반회계	152,379	31,860	157,367	125,507	184,239
특별회계	369,919	22,805	124,077	101,272	392,724
기금	3,202,758	△237,228	974,510	1,211,738	2,965,530

○ 채무결산

(단위:백만원)

구분	2009년도말	당해연도증·감			2010년도말
		계	증가	감소	
합계	3,245,353	572,348	1,176,288	603,940	3,817,701
일반회계	1,076,800	140,550	533,000	392,450	1,217,350
특별회계	2,168,553	431,798	643,288	211,490	2,600,351